

전시기 육군특별지원병제의 추계와 분석

정안기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객원연구원, 동아시아경제사 전공
jougak@naver.com

- I. 머리말
- II. 육군특별지원병제의 법제와 선발시스템
- III. 육군특별지원병의 선발과 추계
- IV. 지원자의 동기와 심리상태
- V. 맺음말

I. 머리말

1938년 2월 일본정부는 조선인의 황민화와 병력 자원화를 목적으로 병역법의 선별적 적용을 인정하는 ‘육군특별지원병령’을 공포하였다. 지원자의 자격은 ‘(일본)호적법 적용을 받지 않는 연령 17세 이상의 제국신민’이었다. 그래서 만 17세 이상의 조선인 남자라면, 누구나 육군특별지원병 모집에 응모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원자 전원이 육군특별지원병으로 선발되는 것은 아니었다. 도지사, 조선총독부, 조선군사령부가 실시하는 3차에 걸친 엄선주의 선발 전행과 일본인과의 “풍속과 관습의 완전한 일치”¹⁾를 목적으로 하는 조선총독부 육군병지원자훈련소(이하, 육군병지원자훈련소)의 훈육 과정을 수료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래서 육군특별지원병제는 조선총독부 관할의 육군병지원자훈련소 입소지원과 조선군사령부 관할의 육군병 복무지원이라는 복선적 지원과 선발시스템을 특징으로 하였다. 육군특별지원병의 선발 정원은 1938년 400명을 시작으로 1943년까지 합계 1만 6,830명에 대해 지원자 합계 80만 3,317명을 기록하였다. 1938년 이래 육군특별지원병제는 일본 제국 차원의 식민지 군사동원의 시금석 혹은 조선인의 황민화(국민화) 정도를 청량하는 바로미터(barometer)였다. 전시체제가 조선은 또 다른 식민지 대만과도 구별되는 황민화정책의 실험실이었다.

한편, 전시기 황민화정책사 연구의 일환으로 육군특별지원병제를 선구적으로 검토한 富田은 1938년 2월 육군특별지원병제를 1938년 3월 제3차 조선교육령 개정 및 1940년 4월 창씨개명과 함께 3대 황민화정책으로 간주해서 각각 정책의 입안과 실시 과정 그리고 정책의 유기적 관련성을 분석하였다.²⁾ 같은 연구는 1938-43년 지원자 80만 2,047명에 대해서 입소자 1만 7,664명의 육군특별지원병을 국가권력의 폭력장치로 내부화해서 조선인의 강고한 민족의식을 말살하는 황민화정책의 구체적인 추진력 혹은 민족모순의 증폭기제로 파악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富田은 육군특별지원병제를 민족적 차별로부터 탈출을 욕망하는 조선인에 대해 일본적인 감정·정조를 내면화한 총량한 제국의 군인으로 개조하는

1) 森下三男, 『陸軍特別志願兵』(立川文明堂, 1942), 17쪽.

2) 富田節子, 『朝鮮民衆と「皇民化」政策』(未來社, 1985).

민족의식의 표백 혹은 황혼화 의식의 염색 기제로 간주하였다. 富田의 연구는 전시기 조선인이 결코 황민화정책의 수동적 객체만은 아니었다는 자극적인 논지와 함께 높은 완성도의 가설을 제시하였다. 이후 富田의 연구는 내선일체화 연구 혹은 1944년 징병제 실시의 전사, 육군병지원자 훈련소의 설치·운영 분석 그리고 서구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 전시동원과의 국제비교 연구로도 계승되었다.³⁾ 그러나 富田을 비롯한 종래의 연구는 결코 간과하기 곤란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제도설계와 추계이다. 富田의 연구는 1938-43년 지원자 80만 2,047명(혹은 80만 2,147명), 입소자 1만 7,664명, 입영자 1만 6,830명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같은 추계는 자료 원천이 불분명하고, 육군병지원자 훈련소 입소자를 곧바로 육군특별지원병으로 간주하는 등 심각한 연구사적 혼란을 초래하였다. 육군특별지원병제는 최우수 병력자원 확보를 위한 도지사, 조선총독부, 조선군사령부로 이어지는 3단계 전형의 엄선주의 선발시스템을 특징으로 하였다. 또한, 지원과 선발은 조선총독부 관할의 육군병지원자훈련소 입소자 선발과 조선군사령관 관할의 육군특별지원병 입영자 선발의 복선적 지원과 선발 시스템을 특징으로 하였다. 富田의 연구는 육군특별지원병 선발 및 추계와 관련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불가피하게 한다.

둘째, 지원의 강제성이다. 종래 최유리는 80만 2,047명에 달하는 지원자를 식민권력에 의한 광범위하고 철저한 강제동원의 결과로 파악하였다.⁴⁾ 그러나 육군특별지원병제는 연평균 47.7배에 달하는 지원자 경쟁률과 혈서지원을 특징으로 하였다.⁵⁾ 또한, 육군특별지원병제는 법제적 강제성을 동반하는 징병제와는 달리 문자 그대로 자발적 지원이었기 때문에 무상의 광영 혹은 최고의 영예 운운의 제국주의 레토릭으로 넘쳐나는 프로파간다가 불가피하였다. 그래서 육군특별지원병제는 종래 식민지

3) 최유리, 『일제 말기 식민지 지배정책 연구』(국학자료원, 1997); 樋口雄一, 『戰時下朝鮮の民衆と徴兵』(総和社, 2001); 표영수, 「일제강점기 육군특별지원병제도와 조선인 강제동원」, 『민족운동사학』 제79호(2014); 블랑돈·퍼머, 塩谷紘, 『日本統治下朝鮮の戰時動員: 1937-1945』(草思社, 2014).

4) 최유리, 『일제 말기 식민지 지배정책 연구』(국학자료원, 1997).

5) 1938년 육군특별지원병제 실시 이래 혈서 지원자는 1938년 18통, 1939년 50통, 1940년 189통, 1941년 382통으로 합계 639통을 기록하였다. 또한, 1948년 자료에 따르면, 육군특별지원병의 혈서 지원자는 이수녕 등 66명이었다. 佐野八十衛, 『戰と朝鮮』(内外公論社, 1943), 65쪽; 民族政經文化研究所編, 『親日派群像-豫想登場人物-』(三省文化社, 1948), 171-174쪽.

지배정책사 연구 동향을 고려하면, 한국 근현대사의 “당혹스러운 딜레마이자 미스터리”⁶⁾라 할 수 있다. 육군특별지원병제는 지원 과정에서 식민권력의 중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원의 가부 결정은 역시 지원자 개개인의 적나라한 욕망을 반영하는 극단의 선택지 가운데 하나였다는 또 다른 가설을 시사한다.

셋째, 지원자의 사회계층이다. 종래 연구는 지원자의 출신지역과 사회계층을 남선지역 세민층으로 한정하는 한편, 지원자의 동기를 사회정책 차원의 糊口之策으로 파악하였다. 지원자 조건은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일본군 복무 외중에서도 가계경제에 지장이 없는 자였다. 더욱이, 지원자는 신장 1.60미터 이상의 생물학적 조건과 함께 학과시험과 구두면접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따라서 1940년 당시 조선인 보통학교 취학율이 약 40%에 그치는 상황에서 지원자의 배출 가계는 취학 아동의 교육비 부담과 정상적인 신체발육 그리고 원활한 일본어 능력을 충족시키는 일부 조선인 계층에 한정되었다. 따라서 남선지역 세민층의 입장에서 육군특별지원병 지원은 그림의 떡 혹은 뜨거운 감자에 불과한 것이었다. 같은 논점은 지원자의 사회계층과 가계 경제력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불가피하게 한다.

이 연구는 한국 근현대사의 ‘당혹스러운 딜레마이자 미스터리’로 간주되는 육군특별지원병제를 식민권력과 조선인 사회와의 정치적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유효한 역사적 프리즘(historical prism)으로 간주해서 육군특별지원병제의 법적 특질과 선발시스템의 제도분석, 1938-43년에 걸쳐 지원, 전행, 입소, 입영에 이르는 추계·분석 그리고 지원자의 동기와 심리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연구 방법은 식민지 지배의 구조와 현상의 강제성을 구별하는 복안적 시점과 분석 단위를 분별력있는 이기심을 본성으로 하는 개인으로 설정하였다. 연구 구성은 제2장에서 육군특별지원병령 공포와 법적 특질, 선발 시스템의 제도설계, 선발 시스템의 작동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일본 법제국 자료를 활용해서 1938-43년에 걸친 연도별·지역별 지원자, 적격자, 입소자, 입영자를 추계·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1941년도 제국의회 설명 자료와 1942년 조선총독부 제1육군군병지원자훈련소 자료를 활용해서 지원자의

6) 조형래, 「황군(皇軍)을 지원(志願/支援)하는 영화 그리고 문학」, 『비평문학』 제34호(2009).

연령, 학력, 직업, 가족관계, 가계경제력, 지원동기, 심리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식민지 군사동원사와 관련한 실증적 보완과 이론적 확장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육군특별지원병제의 법제와 선발시스템

육군특별지원병제의 법제적 기초는 1938년 2월 23일 육군성이 발표한 칙령 제95호 육군특별지원병령이었다. 이를 계기로 1938년 3월 29일 칙령 제156호 조선총독부육군병지원자훈련소관계⁷⁾와 3월 30일 육군성령 제11호 육군특별지원병령 시행규칙이 공포되었다.⁸⁾ 육군특별지원병제는 1938년 4월 3일 神武天皇 祭日에 맞추어 시행되었다.⁹⁾ 이하에서는 육군특별지원병제의 법제적 특질과 제도설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자.

1. 육군특별지원병령의 법제와 특질

육군특별지원제의 법제적 기초를 규정하는 육군특별지원병령은 총 5개조의 구성이다.¹⁰⁾ 제1조와 제2조는 일본 호적법 미적용자에 대한 규정이고, 제3조와 제4조는 병적자의 특별지원과 부대편입 그리고 현역 병의 현역 제대와 보충역 교육소집 해제 이후 중군 지원을 규정하였다. 제1조는 지원자 자격으로 '(일본)호적법 적용을 받지 않는 연령 17세 이상의 제국신민의 남자'로 규정하였다. 당시 일본의 병역법은 일본의 호적법 적용자에 한정해서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속인주의 원칙이었다. 조선과 대만은 일본 식민지로 편입되었지만, 일본 호적법 적용에서 제외

7) 法制局, 「拓務大臣講議朝鮮總督府陸軍兵志願者訓練所官制制定ノ件」(1938.3.23.).

8) 岡久雄, 『陸軍特別支援兵讀本』(帝國地方行政學會朝鮮支部, 1939).

9) 法制局, 「拓務大臣講議朝鮮總督府陸軍兵志願者訓練所官制制定ノ件」(1938.3.23.).

10) 일본에서 징병제는 1872년 12월 29일 '전국 징병에 관한 詔' 및 1873년 1월 10일 태정관의 '징병령' 포고에 따른 국민개병제로부터 개시되었다. 1927년 4월 일본정부는 종래의 징병령을 폐지하고 병역법을 공포하였다. 일본 병역법의 적용 대상자는 일본 호적법을 적용받는 만 20세의 일본인 남자였다. 징병검사는 갑종부터 순차적으로 제1을종, 제2을종, 병종이었고, 부적격자는 정종으로 분류되었다. 징병검사 갑종 합격자는 우수한 제국신민 혹은 '남자의 영예'로 회자되었고, 현역병으로 징집되었다. 內閣官報局, 『法令彙書』(1873), 704-795쪽.

되었기 때문에 병역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그래서 1923년 3월 조선총독부는 일본 호적법과는 별도로 조선후적령을 공포하게 되었다.¹¹⁾ 그 이유는 식민지 조선의 가족제도를 비롯한 관습, 풍속, 문화가 일본과 상이했기 때문이었다. 육군특별지원병령의 법적 효력은 당시 일본제국의 신민이면서도 일본 호적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선과 대만에 한정되었다. 그래서 1936년 6월 전남 광주변호사회 회장 지영구는 일한병합의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로 일본 호적법의 조선 시행을 청원하기도 하였다.¹²⁾

육군특별지원병령 제1조는 형식적으로 조선인만이 아닌 대만인까지 포함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원자 조건은 육군병지원자훈련소 수료 등 육군대신이 규정하는 선발 전형을 위한 응시자격을 구비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또한, 육군병지원자훈련소 입소 지원자는 본적지 관할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제도운영으로부터 대만인은 자동적으로 배제되었다. 더욱이, 육군특별지원병령은 지원자 조건으로 조선인이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단지 ‘호적법 적용을 받지 않는 자’로 규정하였다. 이는 조선인을 일본 국내의 東北人 혹은 九州人과 같이 특정지역의 거주자로 파악되는 제도적 모순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육군특별지원병제의 ‘특별지원’이라는 용어는 일본 국민이면서도 호적법 적용을 받지 않는 자에 대한 선별적인 병역법 적용을 의미하였다.¹³⁾

11) 식민지 조선과 식민본국 일본의 호적제도와와의 구별은 일본인이 조선인 가계의 양자로 입양되는 경우, 일본인 당사자의 병역의무가 소멸된다는 문제점을 내세웠다. 그래서 일본정부는 육해군 병적이 없는 자, 병역의무가 없는 자, 징병 종결처분을 받은 제2국민역을 제외하고는 일본인의 조선인 가계 양자 편입을 금지하였다. 『朝鮮文化普及社, 『朝鮮大觀』(1938), 334쪽; 『朝鮮行政』 제2권 제2호(1938. 2.).

12) 지영구는 “호적법을 조선에 시행할 것과 관련해서 일한병합의 요지는 일한국의 지역을 병합하고 동시에 일한국 민족을 병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지인에는 호적법, 조선에는 호적령을 시행하는 것은 내선인을 근본적으로 구별하는 것으로 앞서의 요지에 반하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최무성(1936.6.12.), 『新聞紙法改正及戶籍法ヲ朝鮮ニ施行ノ請願ノ件』(B05014016700).

13) 한편, 林은 육군특별지원병제의 ‘특별’이라는 용어와 관련해서 일본인의 병역의무(일본인 남자는 만 20세가 되면서 병역의무가 발생하였고, 그래서 만 20세 이전 입대자가 지원병)와 달리 만 20세가 넘어서면 병역법에 따라 지원병을 지원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 주장하였다. 그러나 林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다. 육군특별지원병의 지원 조건은 만 17세 이상의 조선인 남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었다. 실제로, 1938년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는 징병제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역법 미적용으로 굳이 지원자 연령을 20세 미만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었다. 林이 주장하는 만 20세 이하의 연령 제한 여부는 보다 우수한 자질의 지원자 선발을 위한 인적자원 풀을 제약하는 자기모순이다. 林えいたい, 『証言集, 朝鮮人皇軍兵士』 拓植書房(1995), 12쪽.

다음은 육군특별지원병제의 구조와 특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자.

첫째, 지원자의 자격이다. 지원자는 매년 12월 1일 당시 만 17세 이상 남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었다.¹⁴⁾ 또한, 지원자는 육군특별지원병령 제1조에서 육군대신이 규정하는 전형 조건으로 (1)체격 등급 갑종 이상, (2)신장 1.60미터 이상, (3)육군병지원자훈련소 과정을 수료했거나 수료할 수 있는 자였다. 그러나 1940년 7월 육군병지원자훈련소 채용규칙 개정과 함께 선발 인원이 1939년 600명으로부터 일거에 연간 3,000명으로 증원되면서 지원자 요건 또한 신장 1.55미터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었고, 지원자 체격도 제1을종으로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학력수준도 소학교 4학년 수료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자로 하향 개정되었다.

둘째, 병역의 내용이다. 앞서 지원 자격과 요건을 구비하고 소정의 전형을 거쳐 정식의 병적편입을 관정받은 육군특별지원병의 병역은 제도적으로 일본 호적법 적용의 징집자 병역과 완전히 동일한 것이었다. 육군특별지원병 지원자는 현역병 입영과 제1보충병 소집 그리고 제대 또는 소집 해제 이후 예비역과 국민역 등 복무관계도 역시 무차별하였다. 육군특별지원병은 정식 병역 처분 이후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의무만이 아닌 제대 이후 병역에 대해서도 병역법이 규정하는 복무의무가 자동적으로 발생하였고, 일본인 제대자와도 무차별하였다.

셋째, 부대 배치이다. 현역병 입영과 제1보충병 소집 복무는 재영기간, 복무기간, 기타 복무 조건에서 일본 호적법 적용자와 무차별하였다. 실제로, 상관의 명령이라면 죽음을 무릅쓰고 적진에 돌진하는 충성심이 야말로 군대 조직의 생명이다. 그러한 군대 조직을 통해서 조선인 청년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복무상의 무차별은 어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육군특별지원병의 입영과 소집부대는 일본 병역법이 징집본적주의였기 때문에 호적법 미적용자 병역이라 하더라도 조선 지역 주둔 부대의 입영과 소집을 원칙으로 하였다. 1938-39년 육군특별지원병은 조선군 제19-20사단 예하 보병부대, 자동차대, 고사포대, 치중병대에 입영 또는 소집되었다.

넷째, 모집 인원이다. 육군특별지원병의 선발 인원은 육군특별지원병

14) 일본인의 육군 지원병 자격은 소학교 졸업, 해당 연도 12월 1일 현재 만 17세 이상 20세 미만이었으며, 근속 연수 3년이었다. 일반 징병자는 만 20세 이상 근속 연수 2년이었다. 東京青年立志会編輯部編, 『陸軍現役志願兵』 東京青年立志会(1938).

령 제1조 규정에 따라 매년 육군대신이 천황의 재가를 받아서 결정하였다. 그래서 선발 인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었고, 육군대신이 매년 1월 10일까지 조선군사령관이 제출한 모집 인원에 대한 의견과 당해 연도 필요 인원의 천황 상주 및 재가를 거쳐 조선군사령관에게 통보하는 형식이었다. 그래서 육군특별지원병령과 표리일체의 관계를 갖는 육군병 지원자훈련소 관제는 물론이고 훈련생도 채용규칙에서도 채용 인원 혹은 생도 정원을 규정할 수 없었다.

다섯째, 지원자의 수속이다. 육군특별병지원병 복무 지원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지원서에 호적초본을 첨부해서 본적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호적초본에는 호주와 본인을 비롯한 직계 존속, 처자, 형제자매를 기재하였다. 지원서 기재방식과 관련해서 본인과 호주 및 친권자 씨명은 호적초본과 일치해야 하고, 지원서에는 호주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병기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부친이 부재한 경우에는 모친의 씨명을, 친권자 부재의 경우에는 후견인 씨명을 기재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육군특별지원병 지원이 친권자의 동의를 절대 조건으로 했다는 사실이다.

여섯째, 제대 이후 처우이다. 현역병 입영기간은 표1과 같이 2년이었고, 제대 이후 예비역으로 편입되었다. 현역병 출신자는 예비역으로 15년 4개월을 복무한 다음 제1국민병으로 편입되어 40세까지 복무하였다. 제1보충병 출신자는 17년 4개월의 복무기간을 거쳐 제1국민병으로 편입되어 40세까지 복무하였다.¹⁵⁾ 또한, 1938년 8월 조선총독부는 육군특별지원병의 병적사항을 호적에 기입할 것을 결정하였다. 제대 지원병에 대해서는 모범적인 조선인으로 간주해서 경찰관, 소방서원, 철도원, 청년 훈련소지도원¹⁶⁾ 각급학교 교련 조수 등 규율과 통제가 불가결한 관공리

15) 森下三男, 『陸軍特別志願兵』(立川文明堂, 1942), 22쪽.

16) 예를 들어, 1920년 5월 전북 완주군 초포면 태생의 주병용(新本榮一)은 1934년 3월 전주제일공립보통학교 6학년(을)을 마치고 1940년 8월 육군특별지원병 제3기생(보충역)으로 선발되었다. 1940년 12월 주병용은 육군병지원자훈련소에 입소해서 4개월의 훈련을 마치고 1941년 3월 수료하였고, 1941년 4월 조선군 제19사단 제74연대 입대해서 3개월 복무를 마치고 6월 제대하였다. 1942년 12월 전주相生공립청년특별연성소에 취업하였다. 1943년 6월 당시 월 수당은 37원이었고, 1945년 7월 60원이었다. 또한, 1924년 8월 전북 완주군 구이면 태생의 이의성(茂松義星)은 1939년 3월 전주완산공립국민학교를 졸업하고 1940년 육군특별지원병 제3기생(보충역)으로 선발되었다. 1941년 3월 조선총독부 육군병지원자훈련소(경성 제1훈련소)를 수료해서 같은 해 4월 제19사단에 입대하였다, 1941년 7월 육군 이등병으로 제대한 이의성은 1943년 4월 전주완산공립

혹은 준관공리로 채용한다는 방침이었다.¹⁷⁾ 식민권력은 소정의 현역복무를 마친 육군특별지원병 출신자를 재향군인회에 편입시켜 일반 조선인에 대한 국제관념의 배양과 일본정신의 고취 등 천황제 이데올로기 확산을 위한 전도사로 활용한다는 방침이었다.¹⁸⁾

표1-일본 육군의 병역 구분과 내용

병역구분		복무연한	병역 개요
상비 병역	현역	2년	현역병 징집자
	예비역	15년 4개월	현역병 종료자, 평상시 가사에 종사
보충 병역	제1보충병역	17년 4개월	현역병 적격자로서 당해년도 소요 현역병을 초과한 자 가운데 소요 인원내 해당
	제2보충병역	17년 4개월	현역 적격자 가운데 현역 또는 제1보충병으로 징집되지 않은 자
국민 병역	제1국민병역		현역 및 보충병 제대자가 병역 종료 연도부터 38세까지 복무
	제2국민병역		호적법 적용자로서 상비역 및 제1국민역이 아닌 연령 17세부터 40세까지 복무

자료: 森下三男(1942), 『陸軍特別志願兵』 立川文明堂, 47면.

2. 육군병지원자훈련소 관제와 특질

육군병지원자훈련소는 육군특별지원병령 제1조 규정에 따라 육군특별지원병 지원자에 대한 심신의 단련과 정신교육을 실시하는 예비 교육기관이었다. 육군병지원자훈련소 수료는 육군특별지원병 지원을 위한 필요 충분조건이었기 때문에 (일본)호적법 적용을 받지 않는 자에 대한 특수 교육기관으로 국제명칭, 내선일체, 인고단련이라는 황민화교육 3대 원칙에 따라 입소자를 天皇의 股肱 혹은 신민으로 개조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법제상으로 육군병지원자훈련소 입소자는 아직 정식으로 병적을

청년특별훈련소 지도원보로 취업하였다. 취업 당시 월 수당은 35원이었고, 1944년 6월 45원으로 증액되었다. 전라북도(1944), 「청년특별훈련소교직원이력서」(CJA0028151).

17) 당시 일본인의 경우에는 “군대에 징집되어 상등병으로 돌아오면 짧은이 동아리, 재향군인회, 소방조직의 하급간부로 마을의 공적 조직을 실질적으로 지지하는 존재”였다. 요시다 유타카지, 최혜주 옮김, 『일본의 군대』(2005, 논형), 92쪽; 식민지 조선에서 재향군인회의 설립, 구성, 활동에 대해서는 庵途由香, 「朝鮮における帝國在郷軍人会」, 『地域社會から見る帝國日本と植民地: 朝鮮・臺灣・滿洲』(思文閣出版, 2013).

18) 朝鮮總督府, 「朝鮮兵志願兵制度施行に關する樞密院に於ける想定質問及答弁資料」(1937).

취득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식의 육군특별지원병이 아닌 여전히 후보자 신분의 육군병지원자훈련소 생도였다. 육군병지원자훈련소 관제는 본격적인 징병제 시행에 따라 1944년 4월 1일 조선총독부군무예비훈련소관제가 공포되면서 폐기되었다.¹⁹⁾

육군병지원자훈련소의 설립 주체는 조선총독이었고, 운영비는 국고부담의 원칙이었다. 육군병지원자훈련소 입소자의 훈련기간은 6개월이었고, 입소 시기는 6월과 12월이었다. 그러나 1940년 7월 육군병지원자훈련소의 관제 개정과 함께 채용 인원이 연간 3,000명으로 증원되면서 훈련기간도 4개월로 단축되었고, 입소 시기도 4월, 8월, 12월로 바뀌었다.²⁰⁾ 1938년 전반기 입소자는 당시 정식의 훈련소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같은 해 6월 13일 경성제대 문학부에서 입소식을 거행하였다. 1938년 9월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공덕리에 육군병지원자훈련소(현재, 육군사관학교 화랑대)가 정식으로 개설되면서 이전하였다.²¹⁾ 조선총독부는 1942년도부터 입소자 증원(4,500명)에 따라 평양 제2훈련소를 개설하였다.²²⁾ 1940년 이후 훈련기간이 단축되면서 조선총독부는 이를 보완하고자 조선 전역에 걸쳐 다수의 청년훈련소를 확충해서 육군특별지원병 예비군 양성을 강화하였다.²³⁾ 1944년 4월 육군특별지원병제가 폐지되기까지

19) 法制局, 「朝鮮總督府軍務豫備訓練所官制制定ノ件」(1944. 4. 23.).

20) 육군특별지원병의 모집 정원은 1939년 600명에서 1940년 3,000명으로 일거에 5배의 증원을 기록하였고, 지원율도 1939년 20.6배, 1940년 28.1배, 1941년 48.2배에 달하는 고공행진을 기록하였다. 1940년 이후 육군특별지원병 모집 정원의 증원과 높은 지원율은 1939년 6월 육군특별지원병 출신 제1호 전사자였던 이인석 상등병의 전사와 조선인 사회의 '이상한 추모열과 깊은 관련성을 갖는 것이었다. 정안기, 「이인석상등병의 전사와 '죽음의 정치성」, 『일본문화학보』 제76집(2018).

21) 정안기, 「1930년대 조선형 특수회사 〈京春鐵道(株)〉의 연구」, 『서울학연구』 제64호(2016).

22) 육군병지원자훈련소의 증설 문제는 1939년 모집 인원을 종래 400명에서 600명으로 증원하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당시에는 라남, 함흥, 평양, 대구를 중심으로 증설 소재지가 논의되었지만, 10월에 이르러 대구, 평양, 함흥 3개소로 축소되었다. 1942년 12월에 이르러서 평양에 제2육군병지원자훈련소 개설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 朝鮮總督府, 『朝鮮事情』(1943), 208쪽.

23) 식민지 조선에서 청년훈련소 개설은 1928년 5월 용산, 인천, 부산, 대구에 훈련소가 개설되면서 본격화하였다. 이후 전국적으로 공립과 사립 청년훈련소가 雨後竹筍으로 개설되었고, 1939년 10월 조선총독부는 “육군병지원자훈련소 응모자의 소질 향상을 위해 1940년부터 6년제 이상 국민학교에는 필히 청년훈련소를 설치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 때문에 1939년 당시 126개소에 불과했던 청년훈련소는 1940년 786개소, 1941년 836개소로 증설되면서 1941년 말 공립 1,743개소와 사립 79개소 합계 1,822개소에 달하였다. 한편, 1940년 입소자의 자질과 관련해서 “지원병 검사에서 청년훈련을 받은 자는 동작과 언어 태도가 실로 훌륭하고 뛰어나다”는 지적과 같이 육군특별지원병 선발자 가운데 청년훈련소 출신자가 상당수에 달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청년훈련소

경성 제1훈련소는 13기생까지, 평양 제2훈련소는 3기생까지 배출하였다.²⁴⁾

육군병지원자훈련소 입소 합격자는 부형 또는 친척의 보증서와 함께 생도 본인의 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보증서는 입소 생도의 신상 일절을 보증하는 증서였기 때문에 신원이 확실한 자 혹은 상당한 자산가의 보증을 조건으로 하였다. 입소자는 숙식을 포함한 영내 생활이었고, 본인의 이력, 경력, 학과 성적을 명기한 교련수첩이 교부되었다. 입소자의 교육과 훈육방침은 육군병지원자훈련소 소장이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서 시행하였다. 그 내용은 1938년 6월 조선총독부령 제30조 생도훈련요령에서 규정한 훈련 준칙과 기타 규율 그리고 근무규칙이었다. 입소자에 대해서는 숙식을 비롯한 피복과 교재 등이 무료로 제공되었다. 더욱이 1939년부터 조선총독부는 생도 개개인에게 학자금 명목으로 월액 3원을 지급하였다.²⁵⁾ 1938년 입소자의 월간 지출액이 평균 약 5원 62전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입소자는 매월 가계로부터 일정액의 송금을 수급하지 않으면 안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은 지원자 요건과 수속이다. 지원자 요건은 징병검사규칙이 규정하는 일정한 체력 조건의 충족과 함께 육군병지원자훈련소 수료자에 한정하였다. 지원자는 (그림1)과 같이 조선군사령관 앞으로 복무지원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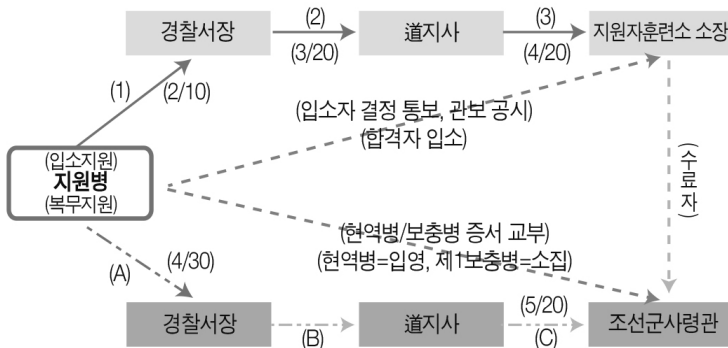


그림1- 육군특별지원병 지원과 선발시스템
 주: 1938년 사례

는 육군특별지원병 지원자의 양성소 성격을 겸하는 것이었다. 朝鮮總督府情報課, 『朝鮮事情資料-志願兵より徴兵へ-』 제3호(1944), 5-6쪽.

24) 장창국, 『육사출업생』(중앙일보사, 1984), 45쪽.

25) 森下三男, 『陸軍特別志願兵』(立川文明堂, 1942), 65쪽.

함께 육군병지원자훈련소 소장 앞으로 입소지원을 동시에 진행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는 육군병지원자훈련소 설립과 운영 주체가 조선총독이었고, 입소자의 훈육 및 입영관계는 조선군사령부 관할이었기 때문이었다. 1938년 3월 29일 조선총독부육군병지원자훈련소관제²⁶⁾가 규정한 지원자 자격은 (1)사상건고, 품행방정, 성질선량으로 황국신민의 자각이 철저한 자(전과자, 민족주의운동, 공산주의운동 관여자 제외), (2)신체건강한 자(신장 1.60미터 이상, 체격등급 갑종), (3)연령 17세 이상인 자²⁷⁾, (4)수업 연한 6년의 소학교를 졸업한자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자, (5)가능하면, 청년훈련소 또는 청년학교 기타 규율단체의 훈도를 받은 자, (6)국어(일본어)를 습득한 자, (7)보통 이상의 생계를 영위하고 素性可良한 가정의 출신자, (8)호주 및 친권자(후견인)의 동의를 받은 자, (9)부윤과 읍면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기관의 보증을 받은 자로 규정하였다.²⁸⁾ 1938년 당시 입소지원서 제출은 매년 12월 모집 공고일로부터 다음해 2월 10일까지였고, 복무지원서 제출은 2월 10일 입소지원 종료일부터 4월 30일까지였다.²⁹⁾ 그러나 육군병 복무지원의 수속도 편의적으로 육군병지원자훈련소 입소지원과 병행하였다. 표2는 1942년 당시 육군특별지원병의 지원, 전형, 채용, 입소 일정이다.

표2- 육군병지원자훈련소 전형 일정

구분	기일/기간
모집 공시	10월 1일
원서 제출 기한	11월 10일
경찰서장 전형	11월 중순-12월 중순
도지사 전형과 검사	12월 하순-2월 상순
조선군사령부 제1차 전형과 검사(학과시험)	3월 25일
조선군사령부 제2차 전형과 검사(신체검사/구두시험)	4월 1일-5월 5일
합격자 발표	입소 전 적당한 기일
육군병지원자훈련소 전기생 입소	6월 상순
육군병지원자훈련소 후기생 입소	12월 상순

자료: 森下三男(1942), 『陸軍特別志願兵』 立川文明堂, 47면.

26) 法制局, 「拓務大臣請議朝鮮總督府陸軍兵志願者訓練所官制制定ノ件」(1938.3.23.).
 27) 1937년 11월 당시 조선총독부 내부자료에 따르면, 지원자 연령을 만17세 이상 20세 미만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일본 병역법에서 규정하는 육군병 지원자의 연령과 동일한 것이었다. 그러나 육군특별지원병제가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육군특별지원병의 지원 연령은 만 17세 이상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만 17세 이상의 조선인 남자는 누구라도 육군특별지원병을 지원할 수 있었다. 朝鮮總督府, 「朝鮮人志願兵制度施行要項」(1937.11.).
 28) 林えいたい, 『証言集, 朝鮮人皇軍兵士』(拓植書房, 1995), 201쪽.
 29) 森下三男, 『陸軍特別志願兵』(立川文明堂, 1942), 18쪽.

지원자의 입소 지원과 복무지원 수속과 서류는 다음과 같았다. 우선, 육군병지원자훈련소 입소지원이다. 1938년도 사례에 따르면, 지원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1)입소원서, (2)부윤 또는 읍면장 보증서, (3)이력서, (4)체력검사표, (5)호적초본, (6)자산 및 소득조서를 구비해서 관할 경찰서장에 제출한다. 관할 경찰서장은 3월 20일까지 앞서 지원자 제출서류 가운데 (6)자산 및 소득조서를 제외한 5개 서류와 함께 (1)신상조사서(2통), (2)지원자 연명표(1부)를 작성해서 주소지 관할 도지사 앞으로 제출한다. 도지사는 (1)채용규칙의 저축 여부, (2)신상조사서의 소견 기재, (3)주소지 관할 도지사의 전형자 원서와 기타 서류 이송, (4)육군병지원자훈련소 소장에 대한 지원자 통보, (5)전형시험 10일 지원자 통지, (6)전형시험 실시, (7)전형시험 성적 통보 및 송부서류 반송, (8)신체검사표 작성, (9)추천자 및 전형위원회 설치와 추천자 범위 및 추천 순위 결정, (10)추천자 명부의 작성, (11)경찰서장에 대한 훈련생도 채용예정자 통지였다. 도지사는 4월 20일까지 지원자 서류(5개)를 비롯한 경찰서장의 제출 서류(2개)와 함께 (1)추천자 명부, (2)신체검사표를 육군병지원자훈련소 소장 앞으로 제출한다. 육군병지원자훈련소 소장은 (1)지원자 숙지요강의 공시, (2)도지사 추천 인원의 통보, (3)도지사 앞으로 신체검사일시와 장소 통보, (4)입소자 채용 결정의 관보 공시와 함께 도지사를 경유해서 입소자에게 합격 여부를 통보하였다.

다음은 육군병 복무지원이다. 지원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1)육군특별지원병 원서, (2)호적초본을 경찰서장에게 제출한다. 그러나 편의상 법제 규정과 달리 2월 10일까지 육군병지원자훈련소 입소 지원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경찰서장은 육군병지원자훈련소 입소 채용 예정자에 한정해서 (1)신상명세서 작성, (2)장정명부 작성, (3)장정명부 부표를 작성한다. 경찰서장은 지원자 서류(2개)와 함께 (1)신상명세서, (2)장정명부, (3)장정명부 부표를 작성해서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도지사는 우선 경찰서장이 제출한 (1)경찰서장의 송부서류를 심사하고 (2)장정연명부를 작성한다. 이후 5월 20일까지 앞서 지원자 제출 서류(2개)와 함께 (1)신상명세서, (2)장정명부, (3)장정명부 부표, (4)장정연명부를 작성해서 조선군사령부 앞으로 제출하였다. 조선군사령부는 (1)전형위원 검사, 학과시험, 징병검사를 거쳐 (2)현역 또는 제1보충역 편입을 판정한다. 이후 조선군사령부는 도지사와 해당 경찰서장을 경유해서

현역병 증서 또는 제1보충병 증서를 교부하였다. 지원자의 현역병과 제1보충병 편입 여부는 조선총독부와 조선군사령부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제2차 전형에서 판정되었다.

3. 입소자와 입영자의 선발과 전형

육군병지원자훈련생의 선발 전형과 육군특별지원병의 선발 전형을 도식화하면, (그림2)와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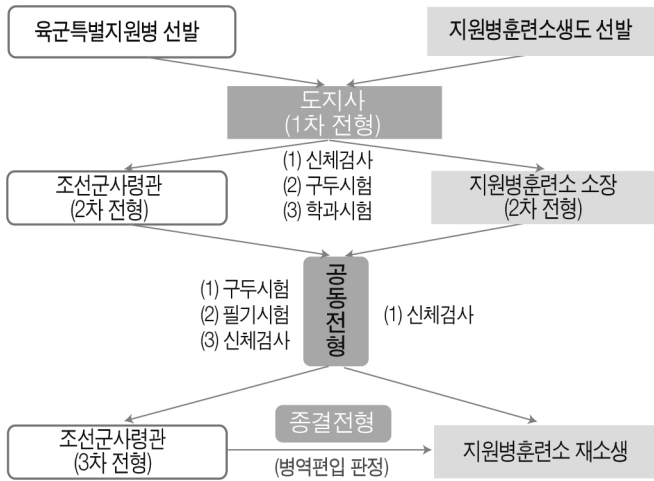


그림2-육군특별지원병 선발과 전형시스템

제1-3차에 걸친 선발 전형의 학과시험과 구두면접은 전부 일본어로 실시되었다. 육군병지원자훈련생 선발을 위한 제1차 전형은 지원자 본적지 관할 도지사였고, 제2차 전형은 육군병지원자훈련소 소장(조선총독부 학무국장 鹽原時三郎)과 조선군사령관 그리고 제3차 전형은 조선군사령관이 담당하였다. 제3차 전형의 경우, 조선군사령부가 육군병지원자훈련소 교육훈련의 와중에서 입소자의 병적편입 여부를 판정하는 최종 전형이었다. 1939년 제1기 전기생의 경우, 1939년 4월 3일 육군특별지원병 모집 공시,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각 도별 1차 전형 실시, 도별 적격자 추천 240명, 6월 3-5일까지 조선총독부와 조선군사령부의 제2차 전형, 6월 10일 202명의 합격자 발표, 6월 15일 합격자의 육군병지원자훈련소

입소의 일정이었다.³⁰⁾ 따라서 종래 富田의 연구와 달리 법제적으로 육군 병지원자훈련소 입소 합격자가 곧바로 정식의 육군특별지원병의 병적 편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하에서는 육군특별지원병 선발과 전형시스템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자.

첫째, 도지사가 주관하는 제1차 전형이다. 도지사는 지원자 관할 경찰 서장으로부터 지원서와 부대서류를 접수하고 관내 지원자를 수합해서 지원자 총수를 육군병지원자훈련소 소장에게 보고한다. 소장은 도별 지원자수를 파악해서 해당년도 입소생도 정원에 따라 추천자와 채용자를 할당한다. 도지사는 육군병지원자훈련소 소장으로부터 입소 채용자 할당에 따라 적격자를 선발해서 소장에게 추천하였다. 도지사의 제1차 전형은 1938년 5월 20일부터 25일에 걸쳐 신체검사, 구두시험(지원자 사상, 태도, 언어, 학력 상식), 학과시험(소학교 졸업 수준으로 국어, 국사, 산술, 중등학교 졸업자 시험 면제)을 실시하였다.³¹⁾ 전형시험 종료 이후 도지사는 추천자전형위원회를 개최해서 성적 순위에 따라 추천자를 결정하고 육군병지원자훈련소 소장에게 통보하는 한편, 지원자에 대해서는 육군병지원자훈련소의 신체검사 일정과 장소를 통지하였다. 도지사는 추천자전형위원회에서 지원자 성적 순위가 결정되면, 육군병지원자훈련소 소장이 할당한 인원의 약 1.5배를 선별해서 적격자를 추천하였다. 또한, 재만조선인 지원자의 지원 수속은 거주지 관할의 일본영사관 혹은 일본대사관 병사원이 취급하였다.³²⁾ 재일조선인은 당초 본적지 수험이 원칙이었지만, 1942년부터 지원자 편의를 위해 大阪전형소를 설치·운영하였다.³³⁾ 재일조선인 지원자는 도지사 추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大阪 현지에서 실시하는 전형시험 합격이 곧바로 적격자(채용 예정자)로 간주되었다.³⁴⁾

30) 『毎日申報』(1938.6.11.).

31) 救世軍大尉 梁元俊, 『治安狀況』 제44-47보, (1938); 京城地方法院檢査局, 『毎日申報』 (1938.5.21.).

32) 『滿洲日日新聞』(1938.4.4.).

33) 1938년 육군특별지원병령 공포 이래 재일조선인의 육군특별지원병 지원은 엄격한 渡航規則에도 불구하고, 최소 5차례에 걸쳐 조선을 왕래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비와 숙박비는 전액 본인 부담이었고, 휴직도 불가피하였다. 그 때문에 1941년 이래 대판부 吹田市 사회의회와 협화회는 조선총독부와 제국정부 앞으로 재일조선인의 일본 국내 전형을 요구하는 청원활동을 전개하였다. 『大阪朝日新聞』(1941.10.3.); 樋口雄一, 『皇軍兵士にされた朝鮮人』(社会評論社, 2001), 22-40쪽.

34) 森下三男, 『陸軍特別志願兵』(立川文明堂, 1942), 19쪽.

둘째, 조선총독부 육군별지원자훈련소 소장과 조선군사령관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제2차 전형이다. 육군별지원자훈련소 소장은 도지사 추천의 적격자에 대해 육군신체검사규정에 준하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였다. 그래서 육군별지원자훈련소 소장이 실시하는 입소자 전형은 신체검사에 한정되었다. 육군별지원자훈련소 소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는 조선군사령관이 추천하는 검사관을 위촉하였다. 한편, 조선군사령관의 제2차 전형은 육군특별지원병령시행규칙 제7조에 기초하였다. 육군별지원자훈련소는 법제적으로 조선총독부 관할이었지만, 입영자 판정과 교육훈련은 조선군사령부 소관이었다. 또한, 육군특별지원병의 지원자 요건은 육군별지원자훈련소 수료가 필수조건이었다. 때문에 조선군사령관은 우수한 자질의 육군특별지원병 선발을 위해 육군별지원자훈련소 입소자 선발에 적극 관여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조선군사령관이 주관하는 지원자 전형은 학과시험, 구두시험, 신체검사로 구분되었다. 그 가운데 육군별지원자훈련소가 시행하는 신체검사와 조선군사령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는 육군신체검사규칙을 준용한 것으로 조선군사령관이 추천한 동일인의 군의관이 담당하였다. 따라서 제2차 전형의 실질적인 주체는 조선군사령관이었다. 1938-39년도 조선군사령관이 주관하는 제2차 전형위원은 제19-20사단사령부 소속 장교와 예하 부대의 장교였다.³⁵⁾ 조선군사령관이 실시하는 학과시험은 구두시험과 필기시험으로 구분되었고, 특히 인물고사를 중시하였다. 학과시험은 1938년 6월 3일부터 6일에 걸쳐 조선군사령부 참모장 기타노 겐조(北野憲造)를 위원장으로 하는 검사반이 주도하였다.³⁶⁾ 학과시험의 난이도와 과목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지만, 소학교 졸업자 수준의 수신, 국어, 국사, 지리, 산술이었다. 입소자 합격 여부는 조선군사령부와 조선총독부 관계자의 의견을 합산해서 결정하였다.

1938년도 지원자 전형과 결과이다. 도지사가 추천한 적격자 심사를 통해서 불합격자 혹은 사고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보충 추천에 따라 당해연도 모집 인원을 확보하였다. 1938년도 추천자 할당은 육군별지원자훈련소 소장이 미리 결원 발생을 예상해서 채용인원 400명에 대해서 20% 할증을 결정하고 도지사에게 통보하였다.³⁷⁾ 육군별지원자

35) 朝鮮軍參謀長北野憲, 「鮮內兵事部長會議書類提出の件」(1939.8.30.).

36) 朝鮮軍殘務整理部, 『朝鮮軍概要史』(1951), 78쪽.

훈련소 입소 합격자는 조선 전체 지원자 2,946명 가운데 도지사 추천 1,663명의 적격자를 선발했지만, 육군병지원자훈련소 소장과 조선군사령관이 주관하는 제2차 전형에서 전기 202명과 후기 204명으로 함께 406명을 선발하였다. 1938년도 도별 지원자, 적격자, 추천자, 신체검사 합격자 추이는 표3과 같았다. 도지사 추천자 가운데 할증 인원은 제2차 전형에서 선별 탈락시켰다. 1938년 전기 합격자의 지역별 추이는 전남 47명, 강원 28명, 충북 27명, 경북, 19명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전남이 전체의 23.3%를 차지하였다. 그 이유는 “同道가 원래 島峽이 많고 친취적 기상”³⁸⁾ 때문으로 파악하였다.

표3- 1938년도 육군병지원자훈련소의 전형 현황

(단위: 명)

구분	지원 인원 총수	동상 서면 적격자	동상 신상 조서 적격자	각도 추천자 할당	1차 도별 전형				2차 전형(전기)				2차 전형(후기)				2차 전형 합격자				
					수험 인원	불참 인원	신검 갑종	합격 인원	수험 인원	신검 불합격	학술 불합격	합격 인원	수험 인원	신검 불합격	학술 불합격	합격 인원	수험 인원	신검 불합격	학술 불합격	합격자	
남선 지역	경기	250	120	78	28	76	2	40	28	14	2	1	11	15	2	5	8	32	4	7	21
	충북	220	171	167	58	161	6	99	58	29	4	1	24	31	9	3	19	63	13	4	46
	충남	140	81	71	24	70	1	41	24	12	6		6	13	3	2	8	26	9	2	15
	전북	303	111	85	30	84	1	72	30	15	4	2	9	16	3	2	11	31	7	4	20
	전남	518	354	312	108	303	9	193	108	54	3	4	47	59	1	5	53	113	4	9	100
	경북	252	113	113	40	112	1	52	40	20	2	-	18	21	1	4	16	41	3	4	34
	경남	292	185	124	44	124	-	66	44	22	2	-	20	23	3	2	18	45	6	2	37
	소계	1,975	1,135	950	332	930	20	563	332	166	23	8	135	178	22	23	133	351	46	32	273
북선 지역	황해	147	47	47	16	45	2	26	16	8	2	-	6	9	1	1	7	17	3	1	13
	평남	122	88	51	18	49	2	13	18	9	1	-	8	10	1	-	9	19	2	-	17
	평북	97	68	58	20	55	3	23	20	10	2	-	8	11	-	1	10	21	1	1	19
	강원	363	235	183	64	178	5	85	64	32	3	1	28	35	4	2	29	67	7	3	57
	함남	63	50	41	14	40	1	21	14	7	2	-	5	8	-	-	8	15	2	-	13
	함북	179	89	48	16	47	1	29	16	8	2	-	6	9	-	-	9	17	2	-	16
	소계	971	577	428	148	414	14	197	148	74	12	1	61	82	6	4	72	156	17	5	135
합계	2,946	1,712	1,378	480	1,344	34	760	480	240	35	9	196	260	28	27	205	507	63	37	408	

주: 전기생 200명 가운데 4명의 부족은 경기 3명, 충북 2명, 충남 1명으로 각 보충 추천하였다.
 자료: 岡久雄(1939), 『陸軍特別志願兵讀本』帝國地方行政學會朝鮮本部, 京城地方法院檢査局(1938), 『治安週報』 제44-47호.

37) 朝鮮總督府, 『朝鮮』 제300호(1940.5.).

38) 『朝鮮行政』 제3권 제1호(1939.1.).

셋째, 조선군사령관이 전담하는 제3차 전형이다. 육군특별지원병령 제7조에서 ‘조선군사령관은 소속 부대의 장교를 중심으로 전형위원을 편성해서 전형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적부를 결정해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해서 현역 또는 제1보충역 편입을 처분한다’고 규정하였다. 실제로, 정식의 병역 처분을 위한 제3차 전형은 육군병지원자훈련소 재소 기간에 실시되었다. 따라서 앞서 제1-2차 전형은 육군특별지원병의 조건 충족의 연장이었고, 제3차 전형 혹은 종결검사를 통과한 입소자에 한정해서 최종적으로 육군특별지원병의 병적 처분이 판정되었다. 참고로, 1938년 전기 입소자에 대한 조선군사령관의 병적 처분 종결검사는 훈련 개시 4개월째에 해당하는 1938년 10월 18일이었다.

제3차 전형의 핵심은 육군병지원자훈련소 입소 이후 훈련생도의 훈육과 황민화 정도였다. 그래서 전형 방법도 지원자 개별이 아닌 종합 전형의 형식이었다. 전형 내용은 육군병지원자훈련소 입소기간에 걸친 교육성적, 근무상황, 위생상태였고, 필요에 따라 개별적 인물고사와 신체 검사를 병행하였다. 1938년 전반기 육군특별지원병의 병적편입 증서는 육군병지원자훈련소 수료증명서 수여 이후 개별적으로 교부되었다. 현역병은 조선군사령관의 징집 명령에 따라 조선군 19사단과 20사단 예하부대에 입영하였고, 1938년 후반기 육군병지원자훈련소를 입소한 제1보충병은 수료 이후 일단 귀가해서 지정부대의 교육소집 명령을 대기하지 않으면 안되었다.³⁹⁾

1939년 8월 육군특별지원병의 선발 전형을 전담하는 조선군 병사부가 신설되었다. 병사부 신설은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군 군정의 획기적인 변화 가운데 하나였다. 1938년 12월 조선군 참모장 기타노 겐조(北野憲造)는 육군성 앞으로 식민지 조선에서 징집, 소집, 징발을 담당하는 병사부 신설을 요청하였다.⁴⁰⁾ 그 이유는 “조선인 가운데 다수의 특별지원병을 채용해서 국방 중책의 분여를 기도하는 와중에서 그 업무가 점차 복잡 광범위하고 이를 사단사령부의 일개 부서가 처리하는 것은 심히 곤란”⁴¹⁾ 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실제로, 1939년 8월 1일 칙령 제518호 “육군병사부령”⁴²⁾ 공포에 따라 육군 병사부가 설치되었다. 조선군사령부 산하

39) 森下三男, 『陸軍特別志願兵』(立川文明堂, 1942), 47쪽.

40) 朝鮮軍參謀長北野憲造, 「朝鮮軍諸施設希望要綱の件」(1938.12.2.).

41) 朝鮮軍參謀長北野憲, 「鮮內兵事部長會議書類提出の件」(1939.8.30.).

병사부는 징병, 소집, 재향군인, 재향장교단, 재향군인 등 조선인 병력자원의 개발, 동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병사부 설치와 편제는 6개 병사구(경성, 평양, 대구, 광주, 라남, 함흥)로 구분되었다. 각 병사부장은 소장급으로 제19-20사단에 예속되었고, 각 병사부는 지원자 전형을 위해 역내의 조선인 유력자를 병사위원으로 선임하였다.⁴³⁾ 1940년부터 병사부는 도지사와 협력해서 해당 병사구의 육군특별지원병 지원자의 선발 전형을 주관하였다.⁴⁴⁾ 1939년도 이후 육군특별지원병 지원자 전형 성적은 1938년과 비교해서 훨씬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⁴⁵⁾ 조선군 병사부는 1944년 본격적인 징병제 실시와 함께 조선인 군사동원의 징병기구로 확대·재편되었다.

III. 육군특별지원병의 선발과 추계

다음은 이 연구가 처음 발굴한 1943년 법제국 자료를 활용해서 육군특별지원병 선발을 위한 전형별 지원자, 적격자, 입소자, 입영자를 추계·분석한다. 나아가, 1938년도 강원도를 대상으로 도별 차원의 지원자를 비롯한 적격자 선발 실태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자.

1. 전형별 추계와 분석

이 연구는 종래 연구와 달리 일본 공문서관 아시아역사자료센터가 소장하는 1943년 5월 25일 법제국 자료를 활용한다.⁴⁶⁾ 법제국 자료는

42) 內閣, 「陸軍兵事部令」(1939, 8.19.).

43) 1939년 8월 18일 조선군참모장이 주관하는 병사부장 회의가 개최되었다. 같은 회의에는 조선인 관계자 36명이 참석하였다. 조선인 관계자 출석자는 경기 손흥준 1명을 비롯해서 강원 3명, 충북 2명, 평북 5명, 평남 3명, 황해 1명, 경북 3명, 경남 2명, 충남 2명, 전북 3명, 전남 4명, 함남 3명, 함북 5명이었다. 바꾸어 말하면, 조선군사령부의 병사부 운영은 조선인 유력자의 적극적인 동원협력을 불가결한 조건으로 하였다. 朝鮮軍參謀長北野憲, 「鮮內兵事部長會議書類提出の件」(1939.8.30.).

44) 김상규, 「전시체제기(1937-1945) 조선주둔일본군의 陸軍兵事部 설치와 역할」, 『한국 근현대사연구』 제67집(2013).

45) 『每日申報』(1938.11.30.).

46) 종래 연구는 표4와 같이 1944년 대장성, 1961년 近藤劬一, 1951년 조선군관무정리부 자료를 활용하였다. 宮田은 1961년 近藤劬一 자료, 樋口는 대장성 자료와 조선군관무

조선총독부가 육군특별지원병제 관제 개정을 위해 법제국 앞으로 제출한 자료이다.⁴⁷⁾ 관제 개정의 이유는 1938-43년에 걸쳐 입소자 선발 증원에 따른 육군병지원자훈련소의 시설 확충과 교수자 증원을 위한 예산 증액이 불가피했기 때문이었다. 법제국 자료는 종래 연구가 활용한 자료와 달리 자료 생산의 주체와 원천이 분명하며, 표5와 같이 1938-43년까지

정리부 자료를 혼용하였다. 최유리는 近藤劔一 자료를, 표영수는 近藤劔一과 조선군잔무정리부 자료를 혼용하였다. 또한, B. 팔머는 박경식의 대장성 자료를 재인용하였다. 그러나 대장성과 近藤劔一 자료의 입소자는 정확히 일치한다. 그러나 지원자는 정확히 100명의 과부족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아마도 1943년도 지원자 파악 과정에서 오기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조선군잔무정리부 자료는 樋口가 주장하는 육군병지원자훈련소 입소자 혹은 표영수가 주장하는 실제 입영자가 아닌 육군성이 계획하는 연도별 입영자 자료이다. 또한, 표영수의 연구는 역종별 인원 산정에서도 오류가 확인된다. 결국, 종래 연구는 자료 원천과 성격이 불분명한 자료를 무비판적으로 혼용하거나 재인용하면서 여러 연구사적 혼란을 초래하였다.

표4- 종래 연구의 추계와 활용 자료

(단위: 명)

구분	년도	(1)大藏省		(2)近藤劔一編		(3)朝鮮軍殘務整理部		
		지원자	입소자	지원자	입소자	현역	보충역	합계
자료현황	1938	2,946	406	2,946	406	300	100	400
	1939	12,348	613	12,528	613	250	350	600
	1940	84,443	3,060	84,443	3,060	900	2,100	3,000
	1941	144,743	3,208	144,743	3,208	1,000	2,000	3,000
	1942	254,273	4,077	254,273	4,077	2,250	2,250	4,500
	1943	303,394	6,300	303,294	6,300	3,200	2,130	5,330
	합계	802,147	17,664	802,227	17,664	7,900	8,930	16,830
관련연구	宮田節子			0	0			
	樋口雄一	0						0
	최유리			0	0			
	표영수			0	0	0	0	0
	B. Palmer	0	0					

자료: 宮田節子, 『朝鮮民衆と「皇民化」政策』(未來社, 1985).
 최유리, 『일제 말기 식민지 지배정책 연구』(국학자료원, 1997).
 樋口雄一(2001), 『戰時下朝鮮の民衆と徴兵』(總和社, 2001).
 표영수, 『일제강점기 육군특별지원병제도와 조선인 강제동원』, 『민족운동사학』 제79호(2014).
 ブランドン・パーマー, 塩谷紘, 『日本統治下朝鮮の戰時動員-1937-1945-』(草思社, 2014).

47) 이 연구에서 활용하는 법제국 자료는 일본 공문서관 아시아역사자료센터(<https://www.jacar.archives.go.jp>)의 검색 화면에서 “朝鮮總督府陸軍兵志願者訓練所”라는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다. 같은 자료는 1938년 이래 육군특별지원병 모집 정원 증원에 따른 예산 증액을 위해 朝鮮總督府陸軍兵志願者訓練所官制 개정이 불가피했고, 그래서 조선총독부가 법제국 앞으로 제출한 관제 개정 자료이다. 같은 자료는 육군특별지원병제와 관련한 연도별 지역별 지원자, 적격자, 입소자, 입영자의 수치를 수록하고 있다. 따라서 종래 육군특별지원병 연구에서 활용한 그 어떤 자료와도 비교할 수 없는 자료 원천이 분명하고 완결성이 높은 자료이다.

연도별 지역별 지원자, 적격자, 입소자, 입영자의 총체적인 파악이 가능하다는 비교우위가 있다.⁴⁸⁾

표5-육군특별지원병 선발 전형과 추계

(단위: 명, %)

구분	모집 계획 인원	지원 대상자	1943년 5월 법제국				지원자 비율과 선발율				
			지원자	적격자	입소자	입영자	지원율	지원배율	적격율	입소율	입영율
1938	400	1,981,239	2,946	1,381	406	395	0.1	7.4	46.9	29.4	97.3
1939	600	2,120,667	12,348	6,247	613	591	0.6	20.6	50.6	9.8	96.4
1940	3,000	2,301,182	84,443	33,392	3,060	3,012	3.7	28.1	39.5	9.2	98.4
1941	3,000	2,437,092	144,745	44,884	3,277	3,211	5.9	48.2	31.0	7.3	98.0
1942	4,500	2,544,814	254,273	69,761	5,017	4,917	10.0	56.5	27.4	7.2	98.0
1943	5,330	2,651,439	304,562	69,227	5,330	5,223	11.5	57.1	22.7	7.7	98.0
합계	16,830	14,036,433	803,317	224,892	17,703	17,350	5.7	47.7	28.0	7.9	98.0

주: 지원배율은 모집 계획인원을 지원자 수로 나눈 값.

지원 대상자는 만17세 이상 만25세 미만 6년 보통학교를 졸업한 남자.

지원율은 모집 계획인원에 대한 지원자 백분율.

적격율은 지원자, 입소율은 적격자, 입영율은 입소자에 대한 백분율.

입영자는 1938~40년도 입소자 대비 평균 입영자 비율을 98%로 환산해서 1941~43년의 추정값.

자료: 法制局(1943.5.25.), 「朝鮮總督府陸軍兵志願者訓練所管制中改正ノ件」.

특히, 도지사 전형으로 선발된 적격자와 함께 1938~40년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입영자 규모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자료이다. 더욱이, 법제국 자료는 육군특별지원병제가 특징으로 하는 복선적 선발 시스템의 보다 정직한 분석도 가능하게 한다. 이하에서는 법제국 자료를 활용해서 육군특별지원병제의 추계와 분석을 시도해 보자.

첫째, 지원자의 연령층이다. 육군특별지원병 지원자는 만 17세 이상의 6년제 보통학교 졸업자였다. 그래서 조선인 교육관련 자료로부터 연간 취학자, 지원연령(만 17세 이상 만 25세) 취학자, 지원 연령층을 각각 추계하였다. 이들 연령층의 지원율은 1938년 0.1%부터 1943년 11.5%로 상승했지만, 6개년 평균으로 5.7%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실제로, 1937년 말 조선총독부도 육군특별지원병제 입안 과정에서 '지원병제를 시행하지만, 과연 지원자가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과 함께 1937년 중일전쟁 발발

48) 식민지기 교육 관련 자료는 古川 논문 의 표2를 활용하였다. 古川 宣子, 「植民地期朝鮮における初等教育」, 『日本史研究』 第370号(1993).

이후 의용대와 종군 지원자의 속출 상황을 검토해서 제도 시행 이후 지원자 쇄도를 낙관하였다. 그러나 1938년도 지원 실태는 “본년도 지원자 총수 2,946명으로 1937년도 조선인 만 20세 인구 17만 5,000명(추산) 대비 1.7인의 비율”⁴⁹⁾이었고, 1940년 적령자 150만 명 가운데 초등학교 졸업자 40만 명에 대해서 지원자 15만 명을 기록하는데 그쳤다.⁵⁰⁾ 그래서 조선총독부는 1940년 모집 정원의 확충에 따라 보다 우수한 자질의 지원자 확보를 위해 지원 요건을 완화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둘째, 지원자 추계와 지원율이다. 종래 연구가 활용한 대장성 자료의 지원자는 80만 2,147명이었고, 近藤劔一 자료는 80만 2,047명이었다.⁵¹⁾ 반면, 법제국 자료의 지원자는 80만 3,317명이었다. 따라서 법제국 자료의 지원자 규모와 비교해서 대장성 자료는 1,170명, 近藤劔一 자료는 1,270명의 과소가 발생한다. 지원자는 표5와 같이 1938년 모집 정원 400명에 대해 2,946명, 1943년도 5,330명에 대해 30만 4,562명의 지원자를 기록하였다.⁵²⁾ 그 때문에 지원자 경쟁률은 1938년도 7.3배에 불과했지만, 1943년에 이르러 57.1배를 기록하였다.⁵³⁾ 매년 지원자 규모가 모집 정원을 크게 상회하면서 지원율도 매년 상승하였고, 6개년 평균 지원율은 47.7배에 달하였다. 특히, 1942-43년도 지원자 쇄도는 “징병으로 일본군에 가야 한다면, 군대에서 조금이라도 우대받고자 지원병에 응모”⁵⁴⁾했기

49) 朝鮮總督府編, 「朝鮮總督府時局對策調査會諮問案參考書(內鮮一體ノ強化徹底ニ關スル件)」(1938).

50) 『毎日新報』(1941.11.9.).

51) 1938년도 육군특별지원병 지원자 총수는 2,946명이었고, 이는 1937년도 조선인 만 20세 인구 17만 5,000명의 1.6%에 불과하였다. 朝鮮總督府, 「第74回帝國議會說明資料」(1938).

52) 1938-39년도 육군특별지원병 지원자가 과소했던 것과 관련해서 당시 대동광업(주) 사장 이성환에 따르면, “제1-제2회는 취지 선전의 불철저로 주저하는 자가 많았다. 금번은 물론 일부에서는 주지를 해독치 못한 자도 있었으나 청년의 대부분은 衷心으로 지원병을 열망하는 자가 많으며, 부모들 중에는 무교육자가 많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취지의 선전과 관련해서는 면 직원과 소학교 교원, 주재소 순사 등이 부락을 순회하는 단순한 권고에 그쳤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성환은 지원병의 취지 보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만능주의가 아니라 군, 면, 부락 단위의 전위적 지도분자 혹은 중견 지도층을 앞세우는 민간의 적극적인 협력과 조직화가 불가결하다고 주장하였다. 大同鑛業株式會社重役 李晟煥, 「志願兵制度運用에 관하여」, 『삼천리』 제12권 제5호(1940.5.).

53) 1940년 이후 모집 정원의 증원과 높은 지원율에 대해서는 정안기, 「이인석상등병의 전사와 ‘죽음의 정치성」, 『일본문화학보』 제76집(2018) 참조.

54) 北原道子, 『北方部隊の朝鮮人兵士—日本陸軍に動員された植民地の若者たち』(現代企画室, 2014), 23쪽.

때문이었다. 특히, 1938년도 지원자 2,946명은 1937년 말 조선인 만 20세 인구 17만 5,000명에 대해서 불과 1.7%에 불과한 것이었다.⁵⁵⁾

셋째, 적격자 추계와 선발율이다. 적격자는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지원자의 본적지 관할 도지사가 실시하는 제1차 전형으로 선발된 입소자 예비생이다. 종래 연구가 활용한 자료는 적격자 정보를 결여했다는 점에서 법제국 자료와 확연히 구별된다. 도별 적격자는 1938년 1,381명을 시작으로 1943년까지 6개년 합계 22만 4,892명을 기록하였다. 지원자의 적격자 선발율은 1939년 50.6%를 예외로 한다면, 6개년 평균 28.0%를 기록하였다.

넷째, 입소자 추계와 선발율이다. 입소자는 육군병지원자훈련소와 조선군사령부의 공동 전형으로 선발하였다. 종래 연구에서 입소자는 두 자료 모두 1만 7,664명으로 추계했지만, 법제국 자료의 입소자는 정확히 1만 7,604명이다. 이는 종래 연구가 대장성과 近藤劬一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입소자 60명을 과대 평가했기 때문이었다. 적격자에 대한 입소자 선발율은 표5와 같이 1938년 13.8%를 예외로 하면, 6개년 평균 7.9%를 기록하였다.

다섯째, 입영자 추계와 선발율이다. 조선군사령관은 육군병지원자훈련소 입소자를 대상으로 제3차 전형을 실시해서 입영자를 선발하였다. 종래 표영수는 조선군잔무정리부 자료의 육군성 계획 인원을 곧바로 입영자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법제국 자료와 비교하면, 입영자 규모는 당초 육군성 계획 인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1938-40년 실제 입영자는 당초 계획과 비교해서 79명의 과부족이 발생하였다. 또한, 법제국 자료에서 1941-43년 입영자 규모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래서 앞서 1938-40년 입영자 선발의 연평균 추정치를 1943년까지 확장해서 산정하였다. 6개년 과부족 인원은 약 381명이었다. 입영자 계획 인원과 실제 인원과의 과부족 발생과 원인과 관련해서 1938년 전기생 입소자 202명의 사례를 참고해 보면, 현역 편정자 195명에 대해서 불합격자 7명을 기록하였다. 불합격자 7명은 교육훈련과 근무성적 모두 양호했지만, 불치병 보유자로 최종 판명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계획과 실제의 과부족 발생은 식민권력도 결코 제어할 수 없는 지원자의 생물학적 한계를 시사한다.

55) 朝鮮總督府陸軍志願兵者訓練所, 「지원병은 이렇게 훈련한다」, 『신시대』 제1권 제12호 (1941.12.).

2. 지역별 추계와 분석

다음은 지역별 지원자, 적격자, 입소자, 입영자의 추계와 분석이다. 1938-39년 조선 전체와 1942년 大阪을 포함하는 지역별 지원자, 적격자, 입소자, 입영자 추계는 표6과 같았다. 大阪은 1942년부터 제일조선인 지원자의 편의를 위해서 별도의 전형소를 설치해서 지원자를 모집하고 입소자를 선발하였다. 또한, 재만조선인 지원자는 1938년부터 일본영사관 혹은 일본대사관 병사원의 수속을 거쳐 본적지에서 지원하였다.⁵⁶⁾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1938년 2월 23일 육군특별지원병령이 공포되었지만, 정식수속은 4월 3일 이후였다. 그럼에도 정식 수속일 이전부터 이미

표6-1938-43년도 지역별 전형과 추계

(단위: 명, %)

구분	지원자		적격자		입소자		입영자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남선 지역	경기	81,293	10.1	18,276	8.1	2,136	12.1	318	8.1
	충북	35,825	4.5	17,009	7.6	880	5.0	311	7.9
	충남	91,695	11.4	16,006	7.1	1,090	6.2	249	6.4
	전북	32,184	4.0	11,629	5.2	1,125	6.4	218	5.6
	전남	108,817	13.5	28,470	12.7	2,273	12.9	508	13.0
	경북	113,327	14.1	21,149	9.4	1,751	9.9	388	9.9
	경남	42,403	5.3	17,055	7.6	1,706	9.7	298	7.6
	계	505,544	62.9	129,594	57.6	10,961	62.3	2,290	58.4
북선 지역	황해	47,958	6.0	13,432	6.0	1,267	7.2	284	7.2
	평남	38,969	4.9	21,707	9.7	1,041	5.9	228	5.8
	평북	41,835	5.2	11,524	5.1	1,113	6.3	237	6.0
	강원	70,649	8.8	26,387	11.7	1,323	7.5	456	11.6
	함남	66,138	8.2	15,033	6.7	907	5.2	281	7.2
	함북	29,475	3.7	5,344	2.4	793	4.5	145	3.7
	계	295,024	36.7	93,427	41.5	6,444	36.6	1,631	41.6
합계	803,317	100.0	224,892	100	17,604	100.0	3,921	100.0	

주: 입영자는 자료의 제약으로 1938년부터 1940년에 한정된다.

자료: 法制局(1943.5.25.), 「朝鮮總督府陸軍兵志願者訓練所管制中改正ノ件」.

56) 『滿洲日日新聞』(1938.4.4.).

관내의 각지로부터 혈서지원⁵⁷⁾과 함께 지원자 문의가 쇄도하였다. 혈서 지원 제1호는 1938년 1월 南총독 앞으로 절절한 애국심으로 충만한 채용 단원서를 제출한 경성부 거주 윤철모였다.⁵⁸⁾ 1938년 2월 말 조선총독부가 집계한 사전 지원자 규모는 모집 인원(400명)의 9배에 달하는 3,500명이었다.⁵⁹⁾

한편, 1941년 재일조선인은 일본 국내 大阪전형소에서 지원과 수험이 가능하였다.⁶⁰⁾ 종래 일본 국내 모집은 채용예정자 결정에 그쳤지만, 1943년부터 입소 합격자마저 결정하게 되었다. 또한, 1943년 1월부터 지원병 입소 전형은 大阪만이 아닌 東京과 福岡로도 확대되었다. 1943년 일본 내무성이 조사한 육군특별지원병 모집 상황에 따르면, 1943년 초반 일본지역 2부 10현의 지원자는 표7과 같이 894명을 기록하였다.

표7- 1943년 大阪전형소와 전형 실태

(단위: 명, %)

부현별	지원자	수험자	불참자	합격자	불합격자	합격율
大阪	718	582	136	345	237	59.3
兵庫	84	69	15	60	9	87.0
京都	15	13	2	11	2	84.6
和歌山	10	10	0	7	3	70.0
三重	2	2	0	2	0	100.0
廣島	16	12	4	12	0	100.0
岡山	4	3	1	2	1	66.7
愛知	31	27	4	21	6	77.8
岐阜	8	8	0	6	2	75.0
福井	3	3	0	2	1	66.7
愛媛	2	2	0	1	1	50.0
香川	1	1	0	0	1	0.0
합계	894	732	162	469	263	64.1

주: 합격율은 수험자 대비.

자료: 內務省警報局保安課(1943.3), 『特高月報』.

57) 조선인 청년들의 열렬한 단원서 제출과 혈서지원에 대한 식민권력의 반응은 무척 당혹스럽다는 입장과 함께 혈서지원의 진의에 의구심을 제기하였다. 실제로, 육군병지원자 훈련소 교수 海田要 대좌는 “열렬한 단원서 혹은 혈서로 赤誠을 紙面으로 피력하는 것은 누구나 가능한 일이며, 결코 중용할 일이 아니다. 그러한 불에 데인듯한 애국심이 아니라 진지한 마음의 준비를 동반하는 끈질긴 애국심을 양성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혹평하였다. 海田 要, 「志願兵制度の現状と将来への展望」, 『今日の朝鮮問題講座』 綠旗聯盟(1939), 29쪽.

58) 『毎日申報』(1938.1.20.).

59) 『毎日申報』(1938.2.19.).

60) 樋口雄一, 『皇軍兵士にされた朝鮮人』(社会評論社, 2001), 98-102쪽.

이들 지원자의 직업은 잡부, 선반공, 주물공, 철공, 금속공이 많았고, 교육 수준은 초등과 수료와 중퇴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지원자 분포는 大阪지역 거주자가 압도적인 비중이었고, 이어서 兵庫縣과 愛知縣의 순이었다. 그러나 실수험자는 732명이었고 이 가운데 469명이 합격하였다. 수험 불참 이유는 주거불명, 가족반대, 청병 기피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大阪지역 지원자 718명의 응모 동기는 (1)전과 확대 및 자극에 따른 솔선 지원 549명, 타인 종용 120명, 징용 회피 12명, 장래 보신 37명(5%)으로 솔선 지원이 전체의 76%를 차지하였다. 다음은 지역별 선발 추계와 분석이다.

첫째, 지역별 지원자이다. 1938-43년 지원자 규모의 지역별 상위 3순위는 경북, 전남, 충남이었고, 하위 3순위는 大阪을 예외로 하면, 함북, 전북, 충북이었다.⁶¹⁾ 관련해서 종래 宮田은 1938-39년 지원자 도별 추계에 따라 지원자의 사회계층으로 소작농이 대규모로 퇴적된 남선지역으로 간주하면서 “대체적인 경향으로 세민이 많은 道일수록 지원자도 많았다”⁶²⁾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상위 3순위와 하위 3순위를 고려하면, 과연 경북지역은 세민이 많아서 지원자가 많았고, 함북지역은 세민이 적어서 지원자가 적었다고 간주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러나 지원자의 선발 기준을 고려하면, 단순한 경제문제에 한정하기 보다는 나중에 검토하는 바와 같이 지원자 개개인의 가정환경과 지원동기 등 다각적 검토가 불가결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지역별 적격자이다. 1938-43년 적격자 규모의 지역별 상위 3순위는 전남, 강원, 평남이었고, 하위 3순위는 함북, 평북, 전북이었다. 적격자 규모는 앞서 선발시스템을 고려하면, 지원자 규모와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그러나 지원자 규모의 제1순위였던 경북은 적격자 순위에서 상위 4순위로 하락했던 반면, 강원은 지원자 상위 5순위에서 적격자 상위 2순위로 상승하였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도지사 주관의 적격자 선발은 신체검사, 학과시험, 구두면접이었다. 이 가운데 구두면접의

61) 지원자의 지역적 편재성은 조선총독부 입장에서 두통거리였다. 1939년 12월 조선총독부 학무국장과 육군지원자훈련소 소장을 겸했던 鹽原은 1940년도 육군특별지원병의 증원 선발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인원은 600명이지만, 여기에 응모한 사람은 1만 3,000명으로 20배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지방적으로 편재되었으므로 앞으로는 응모자의 지방적 편재를 해소할 방침”이라 강조하였다. 『每日新報』(1939.12.8.).

62) 宮田節子, 『朝鮮民衆と「皇民化」政策』(未來社, 1985), 68쪽.

핵심이 지원자의 사상, 태도, 언어였던 점을 고려하면, 주로 일본어 능력이 적격자 선발의 당락을 좌우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어 능력은 교육수준을 포함한 가계 경제력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것이었다.

셋째, 지역별 입소자이다. 1938-43년 입소자의 지역별 상위 3순위는 전남, 경기, 경북으로 전체의 34.9%를 차지했고, 하위 3순위는 함북, 충북, 함남으로 전체의 14.7%를 차지하였다. 이 가운데 적격자 선발 2순위 강원이 입소자 선발에서 상위 5순위로 하락하였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제2차 선발 전형은 조선군사령관이 당락을 결정하였고, 도지사 추천 적격자의 약 20%를 탈락시키는 시스템이었다. 제2차 전형은 징병검사와 학과시험 그리고 인물고사에 치중하였다. 인물고사의 핵심은 황군의 기초 자질과 황민화의 정도였다. 따라서 앞서 입소자 선발에서 밀려난 강원도의 적격자 전형은 황군의 자질과 괴리되는 다수의 적격자를 추천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경기와 경북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자질의 적격자를 추천한 것으로 추정된다.

넷째, 지역별 입영자이다. 법제국 자료에서 확인되는 지역별 입영자는 1938-40년 3개년에 한정된다. 3개년 입소자 4,083명에 대해 입영자 3,921명으로 입소자 162명(4%)이 제3차 전형에서 탈락하였다. 조선군사령관이 주관하는 제3차 전형은 육군병지원자훈련소 재소기간의 교육성적과 근무상황을 점검하는 집단전형이었다. 제3차 전형 이후 현역병은 조선군사령부의 징집명령에 따라 조선군 19사단과 20사단에 배속되었고, 제1보충병은 육군병지원자훈련소 수료 이후 일단 귀가해서 조선군사령관의 교육소집 명령을 대기하였다. 실제로, 1938-40년 입영자의 지역별 분포 상위 3순위는 전남, 강원, 경북으로 전체의 34.5%를 차지했던 반면, 하위 3순위는 함북, 전북, 평남으로 전체의 15.1%를 차지하였다. 육군특별지원병 선발은 전체적으로 남선지역이 우세를 차지하는 지역적 편재성을 특징으로 하였다.

3. 강원도의 적격자 선발과 전형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1938-43년 강원도는 지원자 상위 5순위, 적격자 3순위, 입영자 2순위를 기록하는 등 육군특별지원병의 주요 배출지역 가운데 하나였다. 다음은 1938년 12월 강원도 경찰국 자료를 활용해서

道 단위의 지원자, 적격자, 입소자의 선발 전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자.⁶³⁾ 1938년도 강원도의 육군병지원자훈련소 지원자는 363명과 적격자 183명을 기록하였다. 육군병지원자훈련소 소장이 할당한 강원도의 적격자는 전후기 합계 64명이었다. 강원도의 제1차 전형은 수험인원 178명에 대해 합격자 85명 그리고 추천자 64명을 기록하였다. 1938년 전기생의 제2차 전형은 수험인원 32명 가운데 신체검사 불합격 3명과 학술시험 불합격 1명을 제외한 합격자 28명을 기록하였다.

다음은 1938년 지원자 상황과 적격자 선발이다. 1938년 지원자 상황은 표8과 같이 1938년 4월 30일 정식 수속 이전 지원자가 197명을 기록했지

표8- 1938년도 강원도의 지원자 전형 현황

(단위: 명)

구분	정식이전		정식이후 지원자	지원자 합계	적격자 판정		
	지원자	정식지원			적격	부적격	합계
춘천	27	9	1	10	7	3	10
인제	1	1	4	5	5	0	5
양구	6	5	19	24	7	17	24
준양	6	3	9	12	6	6	12
통천	28	16	84	100	36	64	100
고성	13	3	10	13	3	10	13
양양	16	6	0	6	3	3	6
강릉	4	3	13	16	4	12	16
삼척	6	4	2	6	5	1	6
울진	6	3	12	15	11	4	15
정선	3	1	8	9	7	2	9
평창	5	3	7	10	8	2	10
영월	5	5	6	11	11	0	11
원주	18	5	22	27	21	6	27
횡성	4	0	8	8	4	4	8
홍천	2	2	5	7	1	6	7
화천	7	6	27	33	27	6	33
금화	9	6	2	8	6	2	8
금성	5	4	1	5	4	1	5
철원	8	8	3	11	3	8	11
평강	8	5	6	11	6	5	11
이천	10	7	3	10	3	7	10
합계	197	105	252	357	188	169	357

주: 적부 불명지는 본적지를 갖는 자로서 원서를 본적지에 제출한 자.

자료: 江原道(1938.12), 「治安狀況」 京城地方法院檢査局.

63) 江原道警察局, 「治安狀況」(京城地方法院檢査局, 1938.12.).

만, 정식 수속 이후 실제 지원자는 105명으로 감소하였다. 나머지 92명은 부모의 반대, 학력 부족, 본적지 상이, 신원 불확실, 신장 부족 등으로 정식 수속을 포기했기 때문이었다.⁶⁴⁾ 정식 수속 이후 지원자는 252명으로 지원자 총수 357명을 기록하였다. 지원자 합계 357명의 교육수준은 중등학교 4명, 중등학교 중퇴 6명, 보통학교 322명, 초등학교 중퇴 24명, 서당 1명으로 보통학교 졸업자가 전체의 90.3%를 차지하였다. 지원자의 직업은 농업 206명으로 전체의 57.7%를 차지하였다.⁶⁵⁾ 1938년 5월 말 도지사는 지원자 357명 가운데 적격자 188명과 부적자 169명을 선별하였다. 부적격자의 탈락 사유는 가업 지장(35.3%), 신장 미달(24.9%), 심신 불건전(18.5%), 학력 부족(14.4%), 연령 미달(4.0%), 전과 기록(2.9%)의 순이었다. 다음은 적격자 전형과 관련한 강원도의 자체 평가이다.

첫째, 황국신민의 자각이다. 태도와 응답에서 사상적으로 위협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없었다. 황국신민 계사는 거의 모든 지원자들이 암송했지만, 이 가운데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도 있었다. 시국 인식은 전체적으로 불충분하지만, 시국을 인식하고자 하는 강한 신념이 확인된다. 더욱이, 나라에 대한 봉공의식도 중일전쟁 이래 급격히 함양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제국 군인에 대한 열망이다. 혈서 지원 혹은 이혼 지원 등 초치일관의 지원자도 있었다. 지원 동기와 사유는 진술과 발표 등 교묘함으로 일정한 차이가 있었다. 수험자 일반은 지원 열의가 대단해서 탈락자들 가운데 분개하는 자도 더러 있었다. 그러나 일부 열의가 낮고 단지 권유에 따른 지원 혹은 채용 자체를 기피하는 자도 더러 있었다.

셋째, 지원자 학력과 소질이다. 지원자의 교과 성적은 산술, 국어, 역사였다. 국어는 전체적으로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 국사는 준비가 불충분했고, 산술은 소학교 4년 졸업자 수준으로 전체적으로 양호하였다. 지원자의 소질은 전체적으로 우수하다 할 수 없지만, 순박하고 진지한 자도 많았다. 따라서 금후 교육훈련을 통해서 제국의 군인으로 양성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기타 사항이다. (1)제국신민으로 상식(신공의 제신, 황기, 축제일 등) 부족이 심각하였다. (2)국어(일본어) 습득 정도가 불충분하고 발음도

64) 京城地方法院檢査局, 「治安狀況」 제44-47호(1938.1.25.).

65) 江原道, 「治安狀況」(京城地方法院檢査局, 1938.12.).

부정확하였다. (3)지원 동기를 문의하는 시험관 앞에서 자신의 진의를 입증하고자 손가락을 깨물어 혈서를 쓰는 헤프닝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IV. 지원자의 동기와 심리상태

다음은 1941년 12월 조선총독부 경무국이 제79회 제국의회에 제출한 육군특별지원병제 관련 횡단면 자료와 1942년 조선총독부 제1육군병지원자훈련소(경성)가 작성한 「生徒諸調査表」라는 시계열 자료를 활용해서 지원자의 학력과 가족관계, 연령과 직업, 가계경제력과 지역별 분포, 지원 동기와 심리 상태를 실증적으로 검토해 보자.

1. 학력과 가족관계

먼저, 지원자의 교육수준 검토에 앞서 193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초등교육 실태를 검토해 보자. 1940년 당시 조선 전체의 학령인구 약 137만 6,304명의 취학율 41.6% 가운데 남학생 취학율 60.8%와 여학생 취학율 22.2%를 기록하였다. 또한, 1940년 당시 보통학교 취학자는 입학 지원자 46만 5,683명에 대해 입학자 30만 1,041명으로 64.6%의 취학율을 기록하였다.⁶⁶⁾ 취학 아동의 보통학교 입학 전형은 학교장 재량이었고, 이른바 멘탈테스트의 구술고사와 서류심사였다. 학교장의 재량적 입학 사정은 아동이 처한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교육기회가 차등 배분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1932년 당시 보통학교 취학 아동의 교육비(수업료, 책값, 학용품비 포함)는 연간 15원 80전(당시 쌀 한가마 가격 17원)이었고, 그래서 교육비 부담을 결여한 가계 아동은 취학이 곤란하였다. 1932년 당시 농민층 아동의 취학은 지주, 자작농, 자소작농, 소작농, 궁농의 순이었고, 자소작농과 소작농이 전체의 63%를 차지하였다.⁶⁷⁾

66) 오성철, 『식민지 초등 교육의 형성』(교육과학사, 2000), 133쪽.

67) 1943년 만주제국협회 중앙본부 조사에 따르면, 당시 조선인 초등학교 취학율은 45%였고, 조선인의 일본어 해독자는 전체 인구의 13.9%(남자 22.1%, 여자 5.6%)를 기록하였다. 滿洲帝國協和會中央本部調査部, 『国内に於ける鮮系國民実態』(1943), 24쪽.

다음은 1941년도 지원자의 학력이다.⁶⁸⁾ 표9와 같이 지원자 14만 5,046명 가운데 중등학교 졸업 및 중퇴자가 1,269명, 보통학교 졸업 및 중퇴자 12만 1,534명, 자격 취득 1,692명, 기타 2만 163명을 기록하였다.⁶⁹⁾ 보통학교 졸업 및 중퇴자가 지원자 전체의 83.8%를 차지하였다.⁷⁰⁾ 중등학교 졸업자 및 중퇴자는 전체의 11%를 차지하였다. 중등학교 출신 지역은 경기, 경북, 경북, 평북, 함남의 순이었다.

1938년도 입소자 2,946명 가운데 90% 이상이 소학교 졸업자 및 중퇴자였던 점을 고려하면, 1941년도 지원자 가운데 중등학교 출신자 증가는

표9-1941년도 지역별 지원자 현황과 교육정도

(단위: 명)

구분	중등학교		초등학교		자격취득		기타	합계
	졸업	중퇴	졸업	중퇴	보문합격	기타		
경기	30	117	7,243	3,686	-	-	154	11,230
충북	9	29	5,015	1,867	1	2	1,164	8,087
충남	36	63	8,617	1,896	20	185	2,206	13,023
전북	6	42	3,267	1,119	-	-	335	4,769
전남	23	66	14,826	2,441	1	13	4,949	22,319
경북	55	407	14,641	3,480	-	14	4,930	23,527
경남	48	67	6,739	1,555	-	1	195	8,605
황해	27	31	3,661	903	-	-	89	4,711
평남	24	34	6,778	2,288	-	-	506	9,630
평북	5	110	4,789	1,364	-	1	285	6,554
강원	51	72	7,815	2,821	1	31	940	11,731
함남	73	183	5,889	3,905	2	100	3,333	13,485
함북	4	45	2,763	2,166	-	1,320	1,077	7,375
합계	391	1,266	92,043	29,491	25	1,667	20,163	145,046

주: 4년제 소학교 졸업자는 초등학교 중퇴자로 간주해서 계상.

자료: 朝鮮總督府(1941.12), 「第79回帝國議會說明資料」.

68) 朝鮮初等教育研究會, 「朝鮮志願兵訓練所參觀記」, 『朝鮮の教育研究』 제121호(1938.10.).

69) 식민지기 조선에서 초등교육의 보급과 실태에 대해서는 朝鮮總督府學務局學務課 渡部學, 「朝鮮に於ける初等教育の普及と拡充」, 『朝鮮』 第349/353/354號(1944.6/10/11).

70) 1937년 말 육군특별지원병의 지원자 조건을 충족하는 보통학교 졸업 예정자는 12만 3,623명(관립보통학교 360명, 공립보통학교 7만 9,973명, 사립보통학교 5,401명, 간이 학교 2만 1,560명, 각종학교 1만 6,329명)이었고, 적령자는 만 17세 이상 만 20세에 달하는 조선인 청년 가운데 초등교육을 마친 남자는 전체의 55%에 불과하였다. 또한, 1937년 당시 조선인 적령자의 일본어 해독 정도는 1937년 만 17세에서 만 20세까지 조선인 165만 7,385명 가운데 보통 회화에 지장이 없는 자는 9만 7,033명으로 전체의 5.9%에 불과했고, 1941년 10.6%, 1946년 18.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朝鮮總督府, 「朝鮮兵志願兵制度施行に關する樞密院に於ける想定質問及答弁資料」(1937).

1938년 이래 황민화정책의 일정한 성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지원자가 급증하는 와중에서 상급학교 졸업자도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1940년 지원자 총수 14만 4,745명 가운데 중등학교 이상 졸업자는 348명이었고, 1941년에는 25만 4,273명 가운데 742명을 기록하였다.⁷¹⁾ 더구나, 1942년도의 경우, 제1육군병지원자훈련소(경성) 입소자 1만 1,364명 가운데 전문학교, 중등학교, 보습학교, 고등소학교 출신자 비중이 전체의 12.0%를 기록하였다.⁷²⁾ 또한, 1942년 조선총독부 제1육군병지원자훈련소(경성)가 작성한 「生徒諸調査表」에 따르면, 1938-42년에 걸친 육군병지원자훈련소 입소자 학력은 소학교 6년 졸업생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했던 반면, 중등학교 중퇴 이상 고학력자는 전체의 3.46%를 차지하는데 불과하였다.⁷³⁾ 1941년 당시 지원자의 교육수준과 관련한 조선총독부 인식은 다음과 같았다.⁷⁴⁾

1941년도에는 종래 양반 부호 등이 자제를 지원병에 지원시키는데 주저해 왔지만, 그 태도를 蠅脫하는 경향이다. 귀족계급에서 2명의 지원자를 시작으로 양반 및 부호계급에 속하는 중등학교 정도 이상의 졸업생 응모자도 758명에 달한다. 한편, 지원병훈련소 졸업 이후 제일선 부대에 입대하거나 혹은 戰地에서 활약하는 자들의 성적도 크게 호평을 받고 있다. 최근, 일반에서 지원병에 응모하는 것이 시국하 황국신민으로서 당연한 의무라 사고하는 경향이 현저하다. 내지와 동일하게 시급히 병역법을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실상이다.

1941년도 지원자 가운데 보통학교 이상 학력자 가운데 교원 출신자가 등장하면서 화제가 되었다. 최초의 사례는 1938년 대구사범을 졸업하고 전남 화순군 소재 청풍소학교 교원으로 지원병을 자원해서 1940년 8월 육군병지원자훈련소를 수료한 신상묵이다. 이어서 1941년 11월 함남 신포서초등학교 교원 金村澈二(23세)는 이른바 “백묵 대신 총을! 교단에서 지원병 지원”⁷⁵⁾, 황해도 의주 수진공립보통학교 교원 淸川博重(23세)은 “몸으로 실천! 교단을 박차고 지원병 지원”⁷⁶⁾으로 주목을 받았다. 또한,

71) 三千里社, 「二十五萬の志願兵応募者へ寄す」, 『三千里』 제13권 제12호(1941.11.).

72) 朝鮮總督府第一陸軍兵志願者訓練所編, 「生徒諸調査表」(1942).

73) 朝鮮總督府 第一陸軍兵志願者訓練所, 「生徒諸調査表」(1942).

74) 朝鮮總督府警務局, 「第79回帝國議會說明資料」(1941.12.).

75) 『每日新報』(1941.11.13.).

76) 『每日新報』(1941.11.23.).

1941년 “형제 인텔리 지원병”⁷⁷⁾으로 화제를 모았던 일본대학 법문학과 2학년을 중퇴한 平原英治郎(22세)과 1940년 영창중학을 졸업한 동생 平原俊三郎(18세)이었다. 또한, 1941년 11월 교육자 가정으로 연희전문상과 1학년 羽溪忠郎(22세)의 지원도 화제가 되었다.⁷⁸⁾ 지도층 자체의 고학력자 지원은 육군특별지원병 지원열을 일층 자극하였다.

다음은 지원자의 가족관계이다. 표10은 지원자 9만 5,034명에 대한 가족관계 자료이다. 이 가운데 본인 단독 327명, 1인 가족 1,311명, 2인 가족 4,693명, 4인 가족 2만 1,782명, 5인 가족 이상 5만 3,856명을 기록하였다. 5인 가족 지원자가 전체의 56.7%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서 4인 가족과 3인 가족의 순이었다. 바꾸어 말하면, 소가족보다는 대가족 출신의 지원자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는 지원자가 육군병지원자훈련소 입소 혹은 입대하더라도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덜했던 지원자 요건과 정합하는 실태라 할 것이다. 5인 가족 이상 지원자의 지역별 분포는

표10-1941년도 지역별 지원자의 가족관계와 신분

(단위: 명)

구분	가족관계							신분관계			
	독신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합계	호주자	장남	차남등	합계
경기	20	61	245	567	1,087	2,556	4,536	253	1,311	2,972	4,536
충북	29	119	461	1,239	1,846	2,904	6,598	1,099	1,820	3,679	6,598
충남	27	123	318	1,279	1,989	5,434	9,170	547	2,485	6,137	9,169
전북	5	22	122	268	1,549	1,595	3,561	173	799	1,589	2,561
전남	48	173	619	1,804	2,815	6,323	11,782	820	3,023	7,939	11,782
경북	39	164	582	2,312	2,557	8,559	14,213	1,422	4,506	9,285	15,213
경남	55	200	647	1,219	2,041	4,443	8,605	794	2,729	5,082	8,605
황해	17	37	165	443	677	1,952	3,291	189	919	2,183	3,291
평남	11	48	188	655	1,208	3,985	6,095	302	1,830	3,963	6,095
평북	8	47	154	441	576	2,901	4,127	251	1,275	2,601	4,127
강원	25	155	552	1,453	3,158	6,388	11,731	1,279	4,005	6,447	11,731
함남	20	63	247	669	1,317	4,324	6,640	352	1,804	4,484	6,640
함북	23	99	393	716	962	2,492	4,685	751	1,455	2,480	4,686
합계	327	1,311	4,693	13,065	21,782	53,856	95,034	8,232	27,961	58,841	95,034

주: 지원서를 수리한 지원자에 한정해서 조사.

자료: 朝鮮總督府(1941.12), 「第79回帝國議會說明資料」.

77) 『每日新報』(1941.11.11.).

78) 『每日新報』(1941.11.11.).

70.3%를 기록한 평북을 시작으로 거의 대부분 지역이 50% 이상을 기록했다. 충북과 전북만이 예외적으로 50% 이하를 기록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족관계에서 지원자의 신분이다. 지원자 9만 5,034명 가운데 신분관계는 호주 8,232명, 장남 2만 7,961명, 차남 이하의 구성이었다. 전체적으로 차남 이하 지원자가 전체의 61.9%를 차지했던 반면, 장남 29.4%와 호주 8.7%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또한, 신분관계의 지역별 분포도 차남 이하가 50%를 상회했고, 뚜렷한 지역별 편차도 관찰되지 않는다. 또한, 1938년 2월 육군특별지원병령 공포 당시 조선총독부는 기혼자를 채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전형 과정에서 보다 우수한 자질의 지원자 선발을 위해 기혼자 선발로 전환하게 되었다.⁷⁹⁾ 실제로, 1941년도 지원자 9만 5,034명 가운데 기혼자 2만 7,295명, 내연녀 1만 4,526명, 미혼자 5만 3,213명을 기록하였다. 기혼자 2만 7,295명의 신분은 호주 3,909명, 장남 1만 398명, 차남 이하 1만 2,988명이었다. 지원자의 신분관계는 대가족과 차남 이하 기혼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지원자의 가족과 신분관계는 장자를 중시하는 조선 특유의 가족관계와 조혼 풍속을 반영한다. 지원자 신분과 가족관계는 식민권력의 입장에서 보다 대대적인 지원자 동원을 제약하였다.⁸⁰⁾

2. 연령과 직업

육군병지원자훈련소의 입소자 연령이다. 육군특별지원병의 지원자 연령은 “전년 12월 1일부터 지원년도 11월 30일까지 만 17세에 달하는 자”⁸¹⁾로 규정하였다. 육군특별지원병제는 학력과 지원자 연령 만 17세 이상의 연령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일본 병역법이 규정하는 일본인에 한정된 육군 현역 지원병과 구별되었다. 당시 일본 육군 현역병은 당해연도 12월 1일 당시 17세 이상 만 20세 미만을 적령자로 규정하였다. 육군 현역 지원병은 3개월의 초년병 생활을 거쳐 하사관을 지원해서

79) 伊藤猷典, 『鮮滿の興亞教育』(日黑書店, 1942), 43-44쪽; 朝鮮總督府第一陸軍兵志願者訓練所, 「生徒諸調査表」(1942).

80) 1942년도 후반기 경성 제1육군병지원자훈련소 입소생도 1,709명 가운데 가정 내부에서 지원 반대자는 모친, 처, 조모의 순이었고, 지원 찬성자는 부친, 형제, 친구의 순이었다. 朝鮮總督府第一陸軍兵志願者訓練所, 「生徒諸調査表」(1942).

81) 岡久雄, 『陸軍特別支援兵讀本』帝國地方行政學會朝鮮支部(1939), 75쪽.

입영 4개월부터 소속부대에서 하사관 교육을 받았다. 이후 입영 1년째에 육군교도학교(仙台, 豊橋, 熊本)에 입교해서 1개년의 수업기간을 마치고 오장으로 진급하였다. 하사관의 진급 정년은 오장 6개월, 군조 1년, 조장 2년이었다. 나이가, 38세 미만의 현역 조장과 준위는 엄격한 선발전형을 거쳐 육군 소위 후보자로 육군사관학교에 입교해서 1년에 걸친 초급 장교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들 사관후보생들은 육군사관학교 수료 이후 2개월의 소속부대 사관근무와 장교전형회의를 거쳐 육군 소위로 임관하였다.

육군특별지원병은 일본 병역법의 예외 적용과 함께 만 17세 이상의 연령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일본인에 한정하는 육군 현역 지원병과 구별되는 ‘특별지원’의 형식이었다. 1938년부터 1942년까지 육군병지원자훈련소 입소생 1만 1,364명의 연령 분포는 표11과 같이 18세로부터 27세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관찰된다. 그럼에도 입소자의 연도별 추이는 전체적으로 만 19세부터 만 21세의 연령자가 전체 연령대의 61.1%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 반면, 만 23세 이상 만 27세 이상 상대적인 고령 입소자는 전체의 15.2%를 차지하는데 불과하였다. 따라서 육군특별지원병 합격자의 출생 연대는 입소자 연령 만 20세를 기준으로 하면, 1910년대 후반에서 1920년대 전반이었다. 그래서 이들은 1950년 한국전쟁기 대략 만 30세 전후의 연령대를 형성하였다.

표11-육군병지원자훈련소 입소자의 연령과 추이

(단위: 명, %)

구분	1938년	1939년	1940년	1941년	1942년	합계	비중
18세	28	69	328	391	269	1,085	9.5
19세	93	131	658	631	683	2,196	19.3
20세	95	132	666	794	798	2,485	21.9
21세	67	116	581	639	858	2,261	19.9
22세	67	93	361	413	672	1,606	14.1
23세	30	55	263	239	489	1,076	9.5
24세	18	14	162	92	199	485	4.3
25세	6	3	32	7	78	126	1.1
26세	1		8	2	27	38	0.3
27세	1		1		4	6	0.1
합계	406	613	3,060	3,208	4,077	11,364	100.0

자료: 朝鮮總督府第1陸軍兵志願者訓練所(1942), 「生徒諸調査表」.

한편, 육군지원병훈련소 입소자의 직업 분포이다. 1938-42년에 걸쳐 육군병지원자훈련소 입소자 1만 1,364명의 입소 이전 직업은 표12와 같이 농업 종사자가 전체의 55.6%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럼에도 지역사회에서 일정한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는 관리, 공무원, 교사 그리고 경제적 안정성을 갖는 회사원, 공원, 간수, 철도원, 간수, 운전수도 전체의 22.4%를 차지하였다.

표12- 육군병지원자훈련소 입소자의 학력 분포와 추이

(단위: 명, %)

구분	1938년	1939년	1940년	1941년	1942년	합계	비중
전문학교 졸업					2	2	0.02
중학교 졸업	7	8	19	31	42	107	0.94
중학교 중퇴	8	13	76	72	115	284	2.50
보습학교 졸업	53	62	232	101	270	718	6.32
고등소학교 졸업	25	31	61	46	98	261	2.30
소학교6년 졸업	313	499	2,454	2,622	3,208	9,096	80.04
소학교4년 졸업	-	-	218	336	342	896	7.88
합계	406	613	3,060	3,208	4,077	11,364	100.00

자료: 朝鮮總督府第1陸軍兵志願者訓練所(1942), 「生徒諸調査表」.

특히, 1938-39년에 걸쳐서는 입소자 직업군으로 등장하지 않았지만, 1940년부터 관리, 공무원, 철도원, 감수 등 새로운 직업군이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실태는 1939년을 중일전쟁에 참전한 육군특별지원병의 전사자 발생과 '이상한 추모열'을 배경으로 조선인 사회에서 육군특별지원병에 대한 인식이 크게 제고되면서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안정성을 갖는 직업군의 청년들이 새로운 지원자로 등장했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한 식민권력의 인식이다.⁸²⁾

본 제도가 조선인 유식자간에 다대한 감격으로 받아들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는 상류계급 자체 대부분이 전무에 가깝고 농민, 관료, 혹은 은행, 회사의 고용인, 소사, 점원 등 하급자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원인은 각 방면에서 탐구 중에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들 하층자는 신분 변경이 용이한 동시에 비교적 내지인 관공리와 지식층의 감화를 받기 쉬운 것에 비해서 상류가정 자체는 면학 외종의 자가 많고 동시에 조선 구래의 봉건적 관습으로부터 병졸은 하층 천민에

82) 朝鮮總督府警務局, 「第79回帝國議會說明資料」(1941.12.).

한정되는 것으로 양반 상류층은 이를 치욕으로 간주하는 폐해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동시에 육군에서 가장 환영하는 것은 중견농가의 자체이다.

실제로, 1938년 2월 육군특별지원병령 공포 당시 조선인 정치세력은 조선통치의 신기원, 南총독의 일대 영단 혹은 불후의 금자탑 운운이라 칭송하며, “조선지원병제도제정축하회”⁸³⁾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이들 조선인 유력자층 자체의 육군특별지원병 지원은 거의 전무에 가까운 이른바 面從腹背의 실상이었다. 반면, 조선인 하층민의 입장에서 육군특별지원병은 사회적 지위 상승과 경제력 확보를 위한 입신출세의 새로운 경로였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들 하층민은 1938-43년 연평균 47.7배에 달하는 높은 지원자율과 함께 血書志願마저도 마다하지 않았다. 육군특별지원병의 배출 가계는 조선총독부의 지적과 같이 조선인 사회의 상류층과 구별되는 “身分變更이 용이하고 동시에 비교적 내지인 관공리와 지식층의 감화”⁸⁴⁾에 민감한 존재들이었다.

3. 가계경제력과 지역별 분포

종래 宮田은 1938-39년 추계자료만을 활용해서 지원자의 출신계층과 경제적 조건을 검토하였다. 지원자 출신은 다수의 세민층이 퇴적한 전남, 강원, 경남, 경북, 충북지역 소작농으로 糊口之策의 경제적 동기로부터 육군특별지원병을 지원했다고 주장하였다.⁸⁵⁾ 바꾸어 말하면, 같은 주장은 세민층이 많은 지역일수록 육군특별지원병 지원자도 많았다는 논지이다. 그러나 1938-39년 최하위를 기록했던 함남은 1941년 상위 3위를 기록했고, 1939년 한발로 인해 남선 농촌이 파탄했던 당시 제9위에 그쳤던 경북이 1941년 상위 1위로 급부상하였다. 더구나, 1939년 한발 피해의 본고장이었던 전북 지역은 1938년 이래 시종일관 중간 순위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결국, 宮田의 연구는 지원자 배출의 시기별 혹은

83) 『每日申報』(1937.2.10./2.24.).

84) 鮮總督府警務局, 「第79回帝國議會說明資料」(1941.12.).

85) 宮田은 1936년 말 조선총독부의 도별 세민 조사 자료를 활용해서 세민이 많은 도별 순위를 전남, 경남, 경북, 전북, 충남, 충북 순으로 파악하였다. 朝鮮總督府, 『朝鮮時局對策調査會諮問案參考書(勞務ノ調整ニ関スル件)』(1938.9.); 宮田節子, 『朝鮮民衆と「皇民化」政策』(未來社, 1985), 67-68쪽.

지역별 순위 변동을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드러낸다.⁸⁶⁾

한편, 남산지역 소작농이라 하더라도 지역별 농가 경제력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이다.⁸⁷⁾ 실제로, 1926년 조선 전체 경작 농가 273만 호 가운데 자작 22%, 자소작 33%, 소작 44%, 순화전민 1%의 구성이었지만, 1939년에 이르러 경작농가 291만 호 가운데 자작농 19%, 자소작농 25%, 소작농 54%, 화전민 2%를 기록하였다.⁸⁸⁾ 더욱이, 1921-38년에 걸쳐 900평 이하 영세 경작 농가는 63만 1,508호(25.8%)에서 48만 8,309호(17.0%)로 감소하였다. 또한, 9,000평 이상의 대규모 경작 농가도 28만 1,307호(11.5%)에서 17만 5,906호(6.1%)로 감소하였다. 반면, 900-3,000평의 소농은 85만 6,220호(35.0%)에서 132만 6,543호(46.3%), 3,000-9,000평의 중농은 67만 5,792호(27.6%)에서 87만 8,404호(30.6%)로 증가하였다.⁸⁹⁾ 농가경제의 계층 분화는 자작농과 자소작농 감소에 대응하는 소작농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가 당 경작면적은 오히려 확대되었다. 따라서 지역별 소작농의 다소가 곧바로 지역별 지원자 배출의 다소와 구별된다는 점에서 지원자의 가계 경제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불가결하다.

관련해서 1941년 당시 지원자 가계의 보유자산 실태를 표13과 함께 검토해 보자.⁹⁰⁾ 9만 5,035명에 달하는 지원자 가계의 자산 상황은 100원

86) 朝鮮總督府志願者訓練所教授步兵大佐海田要, 『今日の朝鮮問題講座(3)』(綠旗聯盟, 1939), 16쪽.

87) 식민지기 조선의 지역별 소득 불평등을 추계한 김낙년의 연구는 지원자 가계 경제력의 지역별 격차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같은 연구에 따르면, 1940년 남세자 36만 2,455명(20세 이상 인구의 3.05%, 전체 소득의 21.7%)이 조선 전체 남세소득에서 차지하는 지역별 구성비는 경기(26.8%)를 시작으로 경남, 평남, 함북, 경북, 함북의 순이었다. 또한 남세자의 농업소득 가운데 소작 소득의 지역별 분포는 경기(23.7%)를 시작으로 경남, 경북, 전남, 평북, 황해의 순이었다. 나아가, 이들 남세자 가운데 상위 소득자(1%)의 지역별 분포 집중도는 경기지역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반면, 전남은 인구나 부가가치 생산에서 상위였지만, 최상위 소득자 비중은 현저하게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1940년 당시 지역별 소득 불평등이 가장 심한 지역은 경기였고, 나머지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사실이다. 김낙년, 「식민지기 조선의 소득불평등, 1933-1940」, 『경제사학』 제55호(2013).

88) 朝鮮總督府企劃部, 『朝鮮農業人口=関スル資料(其二)』(1941).

89) 朝鮮總督府企劃部, 『朝鮮農業人口=関スル資料(其二)』(1941).

90) 당시 지원자가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자산 및 소득조서의 내역은 (1)자산의 종류(소제지 또는 소득 발생의 장소), (2)가옥(종류와 규모), (3)예금(은행과 금융조합), (4)보증 및 급료의 연, 월, 일액(관공서, 회사, 공장, 상점), (5)토지(소제, 종류, 규모), (6)잡화상(소제지, 연월 매출액), (7)주주 배당(회사명, 소유 주식수), (8)의사(소제지, 연수 및 월수액), (9)저술(소제지, 원고료 연수 및 월수)을 상세히 명기하지 않으면 안되었

미만에서 50만 원 이상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관찰된다. 이 가운데 1,000원 이상 5,000원 미만 가계가 전체 38.1%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저소득층 100원 미만의 가계는 전체의 8.2%에 대해서 1만 원 이상 고소득층 가계는 전체의 4.1%를 차지하는데 불과하였다.

표13-1941년도 지역별 지원자 가계와 자산 보유 상황

(단위: 명)

구분	100원 미만	100원 이상	1000원 이상	5000원 이상	1만원 이상	10만원 이상	50만원 이상	합계
경기	262	2,170	1,574	375	148	7	-	4,536
충북	1,622	2,852	1,626	390	107	1	-	6,598
충남	465	4,726	3,001	768	198	12	-	9,170
전북	161	1,414	752	182	52	-	-	2,561
전남	815	3,760	5,357	1,508	326	16	-	11,782
경북	659	4,693	4,975	3,798	884	197	7	15,213
경남	594	1,571	5,228	947	261	4	-	8,605
황해	89	892	1,675	452	178	5	-	3,291
평남	1,277	2,459	1,719	522	111	6	1	6,095
평북	184	1,412	1,460	681	385	5	-	4,127
강원	968	4,088	4,801	1,414	440	19	1	11,731
함남	292	2,650	2,419	913	361	5	-	6,640
함북	257	1,343	2,031	873	180	2	-	4,686
합계	7,645	34,030	36,618	12,823	3,631	279	9	95,035

주: 지원서를 수리한 지원자에 한정해서 조사.

자료: 朝鮮總督府(1941.12), 「第79回帝國議會說明資料」.

반면, 1,000원 이상 1만 원 미만의 가계는 전체의 50.5%를 차지하였다. 지원자 배출 가계의 자산 규모와 분포는 해당 지역사회에서 일정한 경제력을 갖춘 중농층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⁹¹⁾ 또한, 1942년 조선총독부 제1육군병지원자훈련소(경성)가 작성한 「生徒諸調査表」에 따르면, 1938-42년에 걸친 육군병지원자훈련소 입소자 1만 1,283명의 가계자산의 분포는 3,000원 이하 70.9%, 만 원 이하 23.64%, 만 원 이상 5.47%의 비중이었다.⁹²⁾

다음은 지원자 가계의 보유자산과 지역별 분포이다. 富田은 지원자의

다. 朝鮮總督府, 「資産及所得調査」, 『朝鮮總督府官報』 제3361호(1938.4.2.).

91) 朝鮮總督府警務局, 「第79回帝國議會說明資料」(1941.12.).

92) 朝鮮總督府第一陸軍兵志願者訓練所, 「生徒諸調査表」(1942).

주요 배출지역으로 대규모의 세민층이 퇴적한 전남, 강원, 경남, 경북, 충북의 남선지역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지원자 가계의 보유 자산과 지역별 분포는 富田의 주장과 달리 당혹스러운 결과를 보인다. 표13과 같이 남선지역에서 1,000원 이상 5,000원 미만 보유 자산의 가계는 전남 45.5%, 강원 40.9%, 경남 60.8%, 경북 32.7%를 차지하였다. 특히 주목을 요하는 것은 5,000원 이상 1만 원 미만의 경우, 경남과 경북이 각각 5.8%와 3.0%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10만 원 이상의 경우에도 경북 1.3%와 경남 0.1%를 기록했고, 50만 원 이상에 대해서도 경북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100원 미만 가계의 지역별 분포에서는 충북이 24.6%의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고, 그 다음으로 강원 8.3%, 전남 6.9%, 경남 6.9%, 경북 4.3%의 순이었다.

이상, 지원자 가계의 경제력과 지역별 분포는 종래 富田이 주장하는 남선 5개 지역 가운데 충북을 예외로 하면, 나머지 지역의 지원자 가계는 대부분이 중농층 출신이었음을 시사한다. 특히, 1938년 육군병지원자훈련소 입소 지침금이 평균 약 20원⁹³⁾이었고, 월간 지출액이 평균 5원 62전이었던 점도 고려하면, 입소자 가계는 평균 이상의 경제력을 구비한 중농층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엄격한 사정 특히 정신적 자질과 가정 사정을 고려해서 빈곤자는 가능하면 피한다”⁹⁴⁾는 방침과 같이 식민권력의 입장에서도 세민층 출신자는 사회적 불만세력 혹은 반일세력으로 전락할 것을 우려해서 채용을 기피하였다.⁹⁵⁾

4. 지원자 동기와 심리

종래 富田은 1938-43년 모집 정원을 크게 상회하는 지원자 규모에 주목해서 식민권력의 위기의식을 반영한 철저한 강제동원의 결과로 파악하였다. 또한, 최유리는 지원 동기 가운데 완전자발의 35%는 경제적

93) 森下三男, 『陸軍特別志願兵』(立川文明堂, 1942), 54쪽.

94) 陸軍省副官, 「朝鮮出身兵取扱教育の参考資料送付に関する件陸軍一般へ通牒」(1939).

95) 이 점과 관련해서는 해방 이후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1960-70년대 사관생도의 대부분은 농민과 도시 근로자 가계의 자제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래서 1970년대 중반 육군사관학교장 정승화 소장은 사관생도의 선발 기준을 변경해서 지원자의 가정 형편과 부친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한 선발 전형의 변경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이경석, 『정승화 자서전』(Human & Books, 2002), 364-366쪽.

여건이 곤란한 세민층으로 간주하는 한편, 관청종용의 55%에 대해서 “결국 일제의 강요에 의한 것”⁹⁶⁾이라 단정하였다. 그러나 1940년대 뉴기니아 전선에 참전했다가, 구사일생으로 귀환했던 제20사단 소속 육군특별지원병 출신자의 증언에 따르면, “나 자신이 조선인임을 자각하고는 있었지만, 일본국민으로 군대에 입대한다는 것에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미 천황의 국민으로 황국신민이 되어 있었다”⁹⁷⁾고 증언하였다. 더욱이, 1938-43년에 걸쳐 모집 정원의 47.7배에 달하는 지원자 규모와 다수의 혈서지원을 단순한 糊口之策 혹은 강제성의 결과로만 파악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정량자료를 활용해서 지원자 동기와 심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자.

먼저, 연령별 지원자의 동기와 심리이다. 먼저, 표14와 같이 연령별 지원 동기는 조사 대상 14만 5,046명 가운데 완전자발 34.6%, 관청종용 54.9% 그리고 기타 10.5%를 기록하였다. 또한, 만 17세에서 만 20세까지 연령대는 완전자발 34.6%, 관청종용 55.0%, 기타 10.4%의 비중을 기록하였다. 실제로, 만 20세 이하 미성년 지원자는 만 20세 이상의 성년 지원자에 비해서 관청종용이 높았다. 한편, 연령별 지원자의 내면과 심리는 조사 대상 14만 5,046명 가운데 애국심 27.9%, 공명심 12.1%, 공리심 15.0%, 직업심 10.4%, 기타 23.6%를 기록하였다. 이 가운데 애국심과 공명심이 51.0%에 대해서 공리심과 직업심이 전체의 25.4%를 기록하였다. 연령별 지원자의 내면과 심리는 만 20세 이하에서 애국심과 공명심 52.2%와 달리 공리심과 직업심 24.5%를 기록하였다.⁹⁸⁾ 관련해서 “자동이든 피동이든 하여간 자기 일생의 운명적 대결정을 짓고자 하는데 本意가 아니라는 그런 약자에게 어떻게 軍國의 大事를 맡길 것인가”⁹⁹⁾하는

96) 최유리, 『일제 말기 식민지 지배정책 연구』(국학자료원, 1997), 190쪽.

97) 林えいたい, 『証言集, 朝鮮人皇軍兵士』(拓植書房, 1995).

98) 조선질소(주) 흥남공장은 1940년까지 조선군 제19-20사단 출신 일본인 제대 병사만을 사원으로 채용해 왔으나, 1941년부터 조선인 육군특별지원병 제대자도 사원으로 채용하게 되었다. 1941년 말 조선질소(주)의 조선인 제대자 채용 인원은 약 80명이었다. 『毎日新報』(1941. 11. 20.)

99) 1943년 당시 천도교 구과 이종린의 회고에 따르면, 자신의 아들도 육군특별지원병을 지원하였다. 아들은 지원자 25만 명 가운데 1명으로 자격, 체력, 학술에서 특감을 받았지만, 구두시험에서 낙방하고 말았다. 아들의 구두시험 낙방 이유는 지원 동기를 묻는 면접관 질문에 대해 아버지의 명령이라 답변했기 때문이었다. 이종린은 육군특별지원병이 우리 반도인에게 완전한 국민의 자격을 부여하는 첫번째 시험인 동시에 입신 출세의 지름길이라 강조하였다. 이종린, 「必生則死, 必死則生 必有大生함이 男兒」, 『毎日新報』(1943. 11. 20.).

식민권력의 반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14-1941년도 연령별 지원자 동기와 심리상태

(단위: 명)

연령	지원동기				심리상태					
	완전 자발	관청 중용	기타	합계	애국심	공명심	공리심	직업심	기타	합계
17세	5,673	9,355	1,915	16,943	4,571	4,207	2,311	1,704	4,150	16,943
18세	6,943	11,089	2,012	20,044	5,651	4,788	2,970	2,076	4,559	20,044
19세	7,771	12,117	2,318	22,206	6,518	5,378	3,397	2,119	4,794	22,206
20세	7,591	11,844	2,125	21,560	6,188	4,919	3,017	2,232	5,204	21,560
소계	27,978	44,405	8,370	80,753	22,928	19,292	11,695	8,131	18,707	80,753
21세	6,486	10,704	1,742	18,932	5,396	4,254	2,931	2,086	4,265	18,932
22세	5,357	8,722	1,610	15,689	4,371	3,432	2,391	1,730	3,765	15,689
23세	3,965	6,682	1,132	11,779	3,146	2,503	2,025	1,328	2,777	11,779
24세	2,694	4,347	1,146	8,187	1,851	1,890	1,368	884	2,194	8,187
25세 이상	3,704	4,812	1,190	9,706	2,761	2,083	1,385	922	2,555	9,706
합계	50,184	79,672	15,190	145,046	40,453	33,454	21,795	15,081	34,263	145,046

주: 지원자 전원에 대한 조사.

자료: 朝鮮總督府(1941.12), 「第79回帝國議會說明資料」.

다음은 지역별 지원자의 동기와 심리이다. 표15와 같이 지역별 지원자 동기는 조사대상 14만 5,046명 가운데 완전자발 상위 3순위는 45.0%의 황해를 시작으로 충남과 함남의 순이었다. 관청 중용 상위 3순위는 71.4%의 경북을 시작으로 전북과 평남의 순이었다.¹⁰⁰⁾ 이를 남선과 북선지역으로 구분하면, 남선지역은 북선지역에 비해서 완전자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관청중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지원 동기에 대한 지역별 심리의 상위 3순위는 애국심에서 함북, 충남, 평북의 순이었고, 공명심에서 전북, 황해, 전남, 공리심에서 전북, 전남, 경기,

100) 육군병지원자훈련소는 입소자의 교육 및 훈육과 관련하여 일부에서 “지원의 동기가 전혀 자기 일신의 명예욕에서 나온 자 혹은 血氣之勇으로 제일선 출동만을 지원의 동기로 하는 자 더욱이 지원병이란 지위를 장래 취직의 수단을 삼으려는 자 등 자못 불순한 동기 혹은 그릇된 애국심에서 나선 자가 있음이 발견된다...이는 결국 반도의 일부가 아직 충분히 병역관념을 결여한 증좌이다. 과거 그들이 병역을 천직으로 여기고 일가의 번영을 원하는 것만이 도덕이 되어 국가·국체를 이해하는 관념이 발달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이다. 여기에서 그들에게 국체의 존엄과 병역의무의 숭고함을 알려줄 필요성을 통감한다”고 지적하였다. 朝鮮總督府陸軍志願兵者訓練所, 「지원병은 이렇게 훈련한다」, 『신시대』 제1권 제12호(1941.12.).

취업심에서 경기, 전북, 평남의 순이었다. 관련해서 종래 宮田 주장과 달리 호구지책으로 간주되는 취업심은 전남이 아니라 경기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15-1941년도 지원자의 동기와 심리

(단위: 명)

구분	지원동기				심리상태						
	자발	증용	기타	합계	애국심	명예심	공리심	취업심	기타	합계	
남선 지역	경기	3,609	6,064	1,557	11,230	2,657	1,957	2,102	1,482	3,032	11,230
	충북	3,035	4,272	780	8,087	2,720	1,594	997	960	1,816	8,087
	충남	5,816	5,973	1,234	13,023	4,747	3,542	1,709	1,172	1,853	13,023
	전북	921	3,371	477	4,769	921	1,504	1,284	583	477	4,769
	전남	7,368	12,412	2,539	22,319	5,675	5,468	4,360	2,655	4,161	22,319
	경북	4,568	16,791	2,168	23,527	3,465	5,225	3,275	2,263	9,299	23,527
	경남	2,962	4,096	1,547	8,605	2,930	1,896	967	619	2,193	8,605
계	28,279	52,979	10,302	91,560	23,115	21,186	14,694	9,734	22,831	91,560	
북선 지역	황해	2,121	2,266	324	4,711	1,422	1,466	634	542	647	4,711
	평남	3,266	5,925	439	9,630	2,603	1,887	1,324	1,152	2,664	9,630
	평북	2,737	3,275	542	6,554	2,256	1,351	903	587	1,457	6,554
	강원	4,684	5,818	1,229	11,731	4,017	2,877	1,551	1,065	2,221	11,731
	함남	5,947	6,109	1,429	13,485	4,342	2,853	1,817	1,358	3,115	13,485
	함북	3,150	3,300	925	7,375	2,698	1,834	872	643	1,328	7,375
합계	50,184	79,672	15,190	145,046	40,453	33,454	21,795	15,081	34,263	145,046	

주: 지원자 전원에 대한 조사, 증용자는 관청.

자료: 朝鮮總督府(1941.12), 「第79回帝國議會說明資料」.

관련해서 주요 논점은 지원 동기와 심리상태의 모순이다. 종래 최유리는 같은 자료를 활용해서 지원 동기의 관청증용을 곧바로 지원의 강제성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애국심, 공명심, 공리심, 직업심 합계가 76.4%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지원자 심리를 고려하면, 관청증용 54.9%를 곧바로 지원의 강제성으로 파악하는 것은 명백한 논리적 모순이다. 특히, 애국심과 공명심은 제국의식의 내면화 혹은 황민화 정도가 높게 표출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공리심과 취업심은 순수한 이기적 동기가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한 것이었다. 결국, 최유리의 연구가 드러내는 지원 동기와 심리상태의 모순은 관청증용의 내실과 해석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관련해서 1938년 당시 중추원 참의와 만주국 초대 총영사를 겸했던

박영철은 육군특별지원병 시행과 관련해서 “공리심으로부터 출세를 바라
 는 천박한 동기에서 지원해서는 안된다”¹⁰¹⁾는 지적과 함께 1939년 조선군
 사령부 조사에 따르면, “이들 지원자 가운데는 제대 후 사회적 대우의
 동상, 취직의 호조건 획득, 일시적인 공명심에 이끌린 자”¹⁰²⁾가 많았다는
 지적 그리고 이들 지원자 대부분이 “모두 성적과 체격과 가정이 비교적
 상위에 속하는 생도들”¹⁰³⁾이었다는 지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¹⁰⁴⁾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지원자 배출 가계는 상대적으로 출세 지향성이 강한
 남선지역의 중농층이었고, 이들은 조선인 상류층과 달리 “신분 변경이
 용이하고 동시에 비교적 내지인 관공리와 지식층의 감화”¹⁰⁵⁾에 민감한
 존재들이었다.¹⁰⁶⁾ 더구나, 육군특별지원병제의 법적 성격이 문자 그대
 로 자발적 지원이었고, 그 어떤 법적 강제성도 결여했던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관청종용은 사전적 의미와 같이 지원의 설득하고 권유하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최유리가 주장하는 지원의 강제성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결국, 지원자 개개인의 죽기 아니면 살기 혹은 장래와 직결된
 지원의 가부는 역시 지원자 개개인 자유의지에 따른 자발적 동원과
 선택의 문제였다.

V. 맺음말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1938년 일본 제국 차원 최초로 식민지
 조선에서 실시된 육군특별지원병제는 모집 정원 1만 6,830명에 대해
 지원자 80만 3,317명으로 연평균 47.7배에 달하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
 였다. 이들 지원자는 도지사, 조선총독부, 조선군사령부가 주관하는
 3차에 걸친 엄격한 전형을 거쳐 선발되었다. 이들 육군병지원자훈련소

101) 朝鮮總督府中樞院參議 朴榮喆, 「志願兵制度實施に対する所感」, 『朝鮮行政』 제2권 제3호(1938.3.).

102) 朝鮮軍參謀長 加藤平, 「鮮內思想狀況の件」(1939.9.26.).

103) 김성수, 『상이군인 김성수의 전쟁』(금하출판사, 1999), 49쪽.

104) 『每日申報』(1938.5.5.).

105) 朝鮮總督府警務局, 「第79回帝國議會說明資料」(1941.12.).

106) 1940년 5월 황성군 서원면 출신의 이창만(19세)은 전형시험 불합격을 비판해서 목을 매고 자살하였다. 또한, 1940년 8월 황해도 신주경찰서는 불합격을 비판해서 자살한 의문의 사체를 발견하기도 하였다. 『每日申報』(1940.5.21./8.17.).

입소자는 병영생활과 동일한 실력제일주의 엄격한 훈육과정을 거치면서 근대사회에 적응하는 시간, 신체, 언어의 규율화와 함께 군대식 실력제일주의와 이른바 ‘군대적 데모크라시’ 혹은 ‘準데모크라시’를 경험하였다.¹⁰⁷⁾ 육군병지원자훈련소 입소자가 처음으로 경험한 군대적 데모크라시는 개성, 인격, 자의식을 부정하고 이른바 군대적 평등성을 실현하는 전혀 새로운 사회였고, 문화적 충격이었다.¹⁰⁸⁾ 이하에서는 머리말에서 지적한 종래 연구와 관련해서 이 연구의 논점을 정리하는 것으로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제도설계와 추계이다. 종래 연구는 서로 다른 자료와 육군성 계획자료를 무분별하게 혼용함으로써 육군특별지원병제 연구와 관련한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1943년 법제국 자료를 새롭게 발굴·활용해서 지원자 80만 3,317명, 적격자 22만 4,892명, 입소자 1만 7,604명, 입영자 1만 7,273명으로 추계하였다. 또한, 종래의 연구는 선발 전형을 도지사 추천의 적격자와 육군병지원자훈련소 입소자에 한정된 단선적 선발시스템으로 파악해서 육군병지원자훈련소 입소자를 곧바로 특별지원병의 병적 편입자로 간주하는 등 연구사적 혼란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지원자로부터 적격자, 입소자, 입영자 선발은 조선총독부가 관할하는 육군병지원자훈련소의 입소자 전형과 조선군사령부가 주관하는 육군특별지원병 전형의 복선적 선발시스템을 특징으로 하였다. 또한, 입소자 선발은 조선총독부와 조선군사령부의 공동 전형이었던 반면, 입영자 선발은 조선군사령부의 단독 전형이었다. 따라서 육군병지원자훈련소 입소자는 육군특별지원병 선발의 예비군에 불과한 신분이었다. 결국, 육군특별지원병 선발시스템은 엄선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육군특별지원병제의 구조와 특질을 시사한다.

둘째, 지원의 강제성이다. 종래 최유리는 80만 2,047명에 달하는 지원자를 식민권력의 광범위하고 철저한 강제적 동원의 결과로 파악하였다.¹⁰⁹⁾

107) 정안기, 「조선총독부 육군병지원자훈련소와 국민 만들기」, 『한일군사문화연구』 제24집(2017).

108) 요시다 유타카저, 최혜주 옮김, 『일본의 군대』(논형, 2005), 80쪽; 정안기, 「조선총독부 육군병지원자훈련소와 국민 만들기」, 『한일군사문화연구』 제24집(2017).

109) 당시 小磯 조선군사령관의 회고에 따르면, 육군특별지원병제 운영과 관련해서 “경찰관의 권유와 설득이 치열하였다. 자기 담당지역으로부터 지원자를 많이 배출해서 행정 성격의 향상에 따른 상사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이기심의 발로였다는 젊은 논의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총독부 학무국은 수시로 도별 출원자 증가 상황을

그러나 지원을 강제하는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결여한 상황에서 이들 대규모 지원자를 과연 강제성의 결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실제로, 1941년 말 지원자 14만 5,046명 가운데 완전자발 34.6%와 관청총용 54.9%를 기록했고, 지원 탈락에 따른 반복 지원도 적지 않았다.¹¹⁰⁾ 또한, 조선인 유력자층은 육군특별지원병제를 南총독의 일대 英斷이라 칭송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面從腹背의 기회주의 행동도 일삼다반사였다.¹¹¹⁾ 그래서 식민권력은 학교¹¹²⁾와 경찰 그리고 관변단체를 동원하는 적극적인 프로파간다, 황당한 군국미담의 유통¹¹³⁾, 제대자를 앞세운 순회강연¹¹⁴⁾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결국, 육군특별지원병제는 조선인 사회의 적극적인 동원협력이 없이는 결코 성립할 수 없는 자발적 동원을 특징으로 하였다. 따라서 지원 과정에서 관청총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원의 여부는 역시 지원자 개개인의 적나라한 욕망을 반영하는 다양한 선택지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것이었다. 육군특별지원병 지원 과정에서 관찰되는 조선인은 종래의 연구와 달리 결코 자신의 생명과 권리를 식민권력에 내맡기는 무기력하고 타율적인 존재가 아니었다.¹¹⁵⁾

셋째, 지원자의 사회계층이다. 종래 연구는 지원자 출신과 사회계층을

신문에 발표해서 도별 경쟁수단으로 활용했다"고 회고하였다. 小磯國昭, 『小磯國昭自伝 葛山鴻爪』(小磯國昭自伝刊行會, 1965), 641쪽.

110) 1942년도 후반기 경성 제1육군병지원자훈련소 입소자 1,709명 가운데 지원 횟수는 1회 978명, 2회 503명, 3회 200명, 4회 27명, 5회 1명이었다. 전체 입소자의 약 43%가 2회 이상을 지원하였다. 朝鮮總督府第一陸軍兵志願者訓練所, 『生徒諸調査表』(1942).

111) 內務省警保局保安課, 『特高月報』(1941.12.).

112) 1939년 당시 문경보통학교 1학년 담임이었던 故박정희 대통령은 학생들의 학예회 활동 일환으로 “지원병 출정”이라는 주제의 연극을 직접 연출하기도 하였다. 조갑제, 『박정희, 한 근대화 혁명가의 비장한 생애』(조갑제닷컴, 2006), 204쪽.

113) 다양한 군국미담 사례 가운데는 1940년 육군특별지원병 모집 정원 3,000명에 대해 지원자가 20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남편을 걱정 없이 지원병으로 내보내고자 자살을 선택한 이른바 군국의 아내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당사자는 당시 총남 서산군 근흥면 용신리에 거주하는 김일제(21)의 아내 조씨(24)였다. 조씨 행동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황당한 내용이다. 『軍國의 妻 예이다 郎君의 志願兵 合格을 祝願하며 ‘치는 방해된다’ 自刎』, 『銃後美談』(獎産社, 1940.4.).

114) 『경성일보』(1939.10.29.).

115) 관련해서 김윤식은 무지랭이 출신의 육군특별지원병 지원이 1943년 말 학도지원병 지원과 판이한 성격으로 ‘신분 상승을 겨냥한 입영’ 혹은 ‘신분 상승을 위한 절호의 기회’였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선우휘는 “지원병 모집은 그들의 팔자에 일대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하늘의 소리”였다고 지적하였다. 김윤식, 『한일 학병 세대의 빛과 어둠』(소명출판, 2012), 12쪽; 선우휘, 『외면』, 『선우휘문학선집(3)』(조선일보출판부, 1987).

남선지역 세민층으로 한정하는 한편, 지원 그 자체를 사회정책 차원의 糊口之策 혹은 경제적 동기로만 파악하였다.¹¹⁶⁾ 당시 조선인의 보통학교 취학율이 약 40%에 그치는 상황에서 지원자들은 “모두 성적과 체격과 가정이 비교적 상위에 속하는 학생들”¹¹⁷⁾이었고, 일부 조선인 계층에 한정되었다. 1941년 당시 9만 5,035명의 지원자 가계는 1,000원 이상 1만 원 미만이 전체 지원자의 88.6%에 달하였다. 따라서 지원자 배출 가계는 종래 연구와 달리 “보통 이상의 생계를 영위”¹¹⁸⁾하는 남선지역 중농층이었다.¹¹⁹⁾ 이들 중농층은 전근대 양반 출신의 상류층과 달리 신분 변경과 출세 지향성이 강한 전근대의 상민 출신이었고, 식민지기 이래 가계 경제력의 확충과 지식들의 근대교육에 힘써 왔던 보다 역동적인 조선인 계층이었다.¹²⁰⁾ 바꾸어 말하면, 이들은 “신분 변경이 용이하고 동시에 비교적 내지인 관공리와 지식층의 감화”¹²¹⁾에 민감한 존재들이었다. 결국, 식민지기 반상차별이 잔존하는 향촌사회의 위계질서를 고려하면, 이들 상민층 혹은 중농층의 입장에서 육군특별지원병제는 보이지 않는 전근대 신분차별로부터 탈출이라는 또 다른 경로이자 지름길이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적나라한 욕망과 의도를 충량한 황국신민임을 증명하는 혈서지원으로 포장하고 드러내는데 결코 주저하지 않았다.¹²²⁾

116) 原剛은 조선인의 육군특별지원병 지원 동기와 관련하여 (1)의식주 해결의 보장, (2)군인의 높은 사회적 지위, (3)일본인과의 무차별로 파악하였다. 그래서 육군특별지원병제는 치열한 경쟁률과 함께 채용자 가운데는 우수한 조선인 청년이 많았다는 것이다. 原剛編, 『日本陸海軍事典(上)』(新人物往來社, 2003), 158쪽.

117) 김성수, 『상이군인 김성수의 전쟁』(금하출판사, 1999), 49쪽.

118) 法制局, 「拓務大臣請議朝鮮總督府陸軍兵志願者訓練所官制制定ノ件」(1938.3.23.).

119) 지원자의 가정환경 및 교육수준과 관련하여 1939년 12월 조선총독부 학무국장 및 육군병지원자훈련소 소장 鹽原은 “현재는 중류 가정 이하가 대부분이며, 중학교 졸업생이 소수이므로 될 수 있으면, 상류가정에서 출신해서 응모하도록 일반 상류가정의 많은 이해와 협력을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毎日新報』(1939.12.8.).

120) 김민철, 「조선총독부의 농촌 중견인물 정책 연구」, 『한국민족운동사』 제41집(2004).

121) 朝鮮總督府警務局, 「第79回帝國議會說明資料」(1941.12.).

122) 어떤 지원자는 혈서지원에 그치지 않고 학과시험에서 혈서답안을 제출해서 시험 감독관과 주위를 놀라게 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1939년 3월 29일 충북은 청주에서 전형시험을 실시하였다. 응시자 약 500여명 가운데 충북 피산 출신 김백경과 청주 출신 오희서는 지원자 합격을 열망한 나머지 혈서답안을 제출해서 주위를 놀라게 하였다. 『毎日申報』(1939.4.2.).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오성철, 『식민지 초등 교육의 형성』. 교육과학사, 2000.
- 고시다 유타카(吉田裕) 저, 최혜주 역, 『일본의 군대: 병사의 눈으로 본 근대일본』. 논형, 2005.
- 이영재, 『제국 일본의 조선영화』. 현실문화, 2008.
- 최유리, 『일제 말기 식민지 지배정책 연구』. 국학자료원, 1997.
- 한기연 편, 『일제의 문화침탈사』. 민중서관, 1970.
- ブランドン・パーマー, 塩谷紘, 『日本統, 治下朝鮮の戦時動員』. 草思社, 2014.
- マーク・ピーター, 浅野豊美訳, 『植民地: 帝国50年の興亡』. 読売新聞社, 1996.
- 宮田節子, 『朝鮮民衆と「皇民化」政策』. 未来社, 1985.
- 内海愛子, 『朝鮮人〈皇軍〉兵士たちの戦争』. 岩波書店, 1992.
- 朴慶植, 『日本帝國主義の朝鮮支配』. 青木書店, 1973.
- 裴淵弘, 『朝鮮人特攻隊: 「日本人」として死んだ英靈たち』. 新潮社, 2009.
- 北原道子, 『北方部隊の朝鮮人兵士』. 現代企画室, 2014.
- 山口隆, 『他者の特攻—朝鮮人特攻兵の記憶・言説・実像』. 社会評論社, 2010.
- 山之内靖, ヴィクター コシュマン, 成田龍一編, 『總力戦と現代化』. 柏書房, 2000.
- 森村敏己, 『視覚表象と集合的記憶』. 旬報社, 2006.
- 樋口雄一, 『戦時下朝鮮の民衆と徴兵』. 総和社, 2001.
- 樋口雄一, 『皇軍兵士にされた朝鮮人』. 社会評論社, 2001.
- 洪宗郁, 『戦時期朝鮮の轉向者たち』. 有志舎, 2011.

2. 논문

- 김낙년, 「식민지기 조선의 소득불평등, 1933-1940」. 『경제사학』 제55호, 2013, 249-279쪽.
- 김민철, 「조선총독부의 농촌 중견인물 정책 연구」. 『한국민족운동사』 제41집, 2004, 187-232쪽.
- 김상규, 「전시체제기(1937-1945) 조선주둔일본군의 陸軍 兵事部 설치와 역할」. 『한국근현대사연구』 제67집, 2013, 417-450쪽.
- 이덕기, 「제국의 호명, 빛나간 응답」. 『한국극예술연구』 제31집, 2010, 239-270쪽.
- 이영훈, 「20세기 전반 彦陽의 小農社會」. 『경제논집』 제54권 제1호, 2015, 75-182쪽.
- 장용경, 「조선인과 '국민'의 간극」. 『역사문제연구』 제15호, 2005, 279-300쪽.
- 정명중, 「과시즘과 감성동원」. 『호남문화연구』 제45호, 2009, 337-380쪽.
- 정안기, 「1930년대 조선형 특수회사 <경춘철도(주)>의 연구」. 『서울학연구』 제64

- 호, 2016, 155-213쪽.
- _____, 「조선총독부 육군병지원자훈련소와 국민 만들기」. 『한일군사문화연구』 제24집, 2017, 255-302쪽.
- _____, 「이인석상등병의 전사와 '죽음의 정치성」. 『일본문화학보』 제76집, 2018, 159-189쪽.
- 조성운, 「일제하 청년훈련소의 설치와 운영」. 『수원학연구』 제2호, 2005, 215-238쪽.
- 표영수, 「일제강점기 육군특별지원병제도와 조선인 강제동원」. 『민족운동사학』 제79호, 2014, 95-138쪽.
- 古川宣子, 「植民地期朝鮮における初等教育」. 『日本史研究』, 第370号, 1993, 331-516쪽.
- 宮田節子, 「皇民化政策の構造」. 『朝鮮史研究会論文集』 第29号, 1991, 41-59쪽.

국 문 초 록

이 연구는 한국 근현대사에서 ‘당혹스러운 딜레마이자 미스터리’로 회자되는 육군특별지원병제를 식민정부와 조선인 사회와의 정치적 의존 관계와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역사적 프리즘(historical prism)으로 간주해서 1938-43년에 걸친 육군특별지원병제의 지원과 선발시스템의 제도분석, 연도별 지역별 지원자, 적격자, 입소자, 입영자의 추계와 분석 그리고 1941년 횡단면 자료를 활용한 지원자의 동기와 심리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은 구조와 현상의 강제성을 구별하는 복안적 시점과 분석의 단위를 분별력있는 이기심을 본성으로 하는 개인으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는 1943년 당시 일본 법제국 자료와 1941년 제국의회 자료를 활용해서 육군특별지원병제의 구조와 특질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투고일 2017. 11. 27.

심사일 2018. 2. 15.

게재 확정일 2018. 5. 30.

주제어(keyword) 식민지 전시동원(Colonial Wartime Mobilization), 육군특별지원제 (Army Special Volunteer System), 富田筋子(Miyata-Setuko), 복선적 선발시스템 (Double-tracked Screening System), 차별로부터 탈출(Escape from Discrimination), 자발적 동원(Voluntary Mobilization), 추계와 분석(Estimation and Analysis)

Abstracts

An Analysis of the Army Special Volunteer System in Wartime and Enlistee Estimation

Joung, An-ki

This study regards the army special volunteer system, which is often dubbed an ‘embarrassing dilemma and mystery’ in modern Korean history, as a valid prism through which political dependent relations and interactions between the colonial government and colonized society can be investigated. It analyzes the recruitment procedure of the system, covering application, screening, admission and enlistment from 1938 to 1943, and estimates the number of applicants, qualified persons, admittees and enlistees by region and year. Then, it attempts an in-depth examination of the applicants’ motivations and inner thoughts, using cross-sectional data from 1941. For research methodology, it employs a reconstructive perspective in which coercion in structure and reality is discerned, and the analysis unit is individuals who are, in nature, sensible and selfish at the same time. Relying on information available from Japan’s Legislation Bureau (1943) and the 1941 Session of the Imperial Parliament, the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army special volunteer system.

